2022년도 제23회
한국법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교육과정 개편과 법교육의 전망

2022. **11. 19. Sat. 14:00**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10-1동) 103호

주최 한국법교육학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법교육학회
Law-Related Education Center

학술대회 세부 일정

일 시		행사내용	사회
등록 및 개회	13:30~ 14:00	❖ 등록	이지혜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4:00~ 14:20	❖ 개회사	
논문상 시상	14:20~ 14:40	❖ 법교육 논문상 시상	
연구윤리교육	14:40~ 15:00	❖ 연구윤리교육	
Session 1	15:00~ 16:40	**제1발표:** 2022 개정 사회과 법과 사회 교육과정 개발 논의 - 내용 체계의 영역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 - 발표자: 양지훈(안산공업고등학교 교사) 정필운(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토론자: 김명정(강원대학교 교수)	
		제2발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법과 사회〉 교과의 전망 - 발표자: 정상우(인하대학교 교수) 강은영(인하대학교 강사) - 토론자: 이소연(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휴식			
Session 2	16:50~ 17:40	**제3발표:** 디지털 전환과 법교육의 미래 - 법사회학적 접근 방식의 시사점 - - 발표자: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토론자: 윤성현(한양대학교 교수)	
폐 회			
총 회			

목차

Ⅰ. 2022 개정 사회과 법과 사회 교육과정 개발 논의
- 내용 체계의 영역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 ····· 1
발표자 : 양지훈(안산공업고등학교 교사)·정필운(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명정(강원대학교 교수)

Ⅱ.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법과 사회〉 교과의 전망 ····· 23
발표자 : 정상우(인하대학교 교수)·강은영(인하대학교 강사)
토론자 : 이소연(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Ⅲ. 디지털 전환과 법교육의 미래
- 법사회학적 접근 방식의 시사점 - ····· 53
발표자 :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토론자 : 윤성현(한양대학교 교수)

2022 개정 사회과 법과 사회 교육과정 개발 논의*

- 내용 체계의 영역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

양지훈(안산공업고등학교 교사)**
정필운(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목 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개발 방향
Ⅱ. 법과 사회 교육과정 개발 방향
1. 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사항
2. 법과 사회 과목의 목표
3. 교육과정 내용 선정과 조직
Ⅲ. 영역에 대한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
1. 개인 생활과 법
2. 국가 생활과 법
3. 사회생활과 법
4. 학교생활과 법
Ⅳ. 결론: 논의 및 제언

2022 개정 사회과 법과 사회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사회과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루어 왔던 법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연구하게 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법과 사회는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인 생활과 법, 국가 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학교생활과 법 총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법교육의 관점에서 핵심 아이디어와 핵심 개념을 재선정하였고 학습자의 법적 경험 확장을 고려하여 내용 배열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의 법 영역의 내용 요소를 고려하고 법학의 최신 동향과 현대적 법률관계를 반영하고 입법교육을 도입하였다. 개인 생활과 법 영역에서는 법과 사회 교육과정 첫 번째 영역으로 학습자의

---

* 이 글은 2022년 9월 24일 한국사회과교육학회와 한국열린교육학회에서 주최한 2022년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pwjung@knue.ac.kr)

법적 경험 확장을 고려하여 가족 관계 형성, 채권, 물권 등 사적 자치부터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국가 생활과 법 영역에서는 기존의 헌법과 형법을 영역으로 분리하였는데 헌법과 형법을 한 영역에서 공법을 다루도록 하였다. 사회생활과 법에서는 사회법 이외에도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과 지적 재산권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 학교생활과 법 영역에서는 시민과 학생으로서의 권리의 의무를 이해하고 학교폭력의 사례를 통해 학교생활에서 법적 문제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며,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지난 교육과정과 현행 교육과정 연구자의 노력을 절실히 느꼈으며, 앞으로 사회과에서의 법교육의 끊임없는 연구에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주요어 : 교육과정, 일반사회, 법교육, 법과 사회, 진로 선택 과목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고등학교 사회과 법 영역 선택과목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치 영역을 포함하여 ‘법과 정치’ 과목으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법 영역과 정치 영역을 좀 더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정치와 법’으로 개발하였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정치 영역과 분리하여 법 영역을 중심으로 진로 선택 과목인 ‘법과 사회’ 과목으로 개발하였다.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교과 공통과목 및 선택 과목 구성

교과(군)	공통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사회	통합사회 1, 2	사회와 문화, 세계시민과 지리	정치, 경제, **법과 사회**, 국제관계의 이해,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필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인 ‘법과 사회’ 과목을 개발하는 담당 연구자로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구받은 사항, 필자가 좀 더 고려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 개발한 시안에서 영역에 대한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을 발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법과 사회’ 과목 개발 시 고려하도록 요구받았던 사항과 내용 선정과 조직에 있어 고려한 사항을 제시할 것이다(Ⅱ). 그리고 각 영역에서의 전문가 및 외부 의견과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Ⅲ).

2. 개발 방향

200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법과 사회’ 과목은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법과 사회’ 과목은 단순히 이전의 정치 영역과 법 영역의 분리만 이루어진 교과가 아닌 ⅰ) 사회과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ⅱ) 기존의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 법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요소를 재구조화하여 법교육의 목표에 충실하게 구현하고, ⅲ)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법 영역을 단순히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닌 질 높은 법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에 주안을 두고 있다. 다음은 2022 개정 사회과 법과 사회 과목의 성격 일부이다.

> 법과 사회 과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대해 이해하고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학생들에게 법 관련 분야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일반사회 영역의 진로 선택 과목이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법과 사회 과목의 개발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통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다. 법과 사회 외부 전문가는 법학 전공의 내용학 교수, 사회과 교육 전공의 교육학 교수, 학교 현장에서의 중학교 사회과 교사와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를 외부 전문가로 모시고 1차에서 4차까지 검토가 진행되었다. 1차 외부 전문가 검토에서는 법과 사회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차 외부 전문가 검토부터는 성취기준 해설을 포함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3차와 4차 외부 전문가 검토에서는 교수학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하여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다.

<표 2> 2022 개장 교육과정 고등학교 법과 사회 외부 전문가 구성

구분	외부 전문가 구성	기간
1차 외부 전문가	내용학 교수 1명, 교과교육학 교수 2명, 중학교 교사 1명, 고등학교 교사 1명	2022. 01. 27. - 2022. 01. 29.
2차 외부 전문가	교과교육학 교수 1명, 중학교 교사 1명, 고등학교 교사 1명	2021. 07. 21. - 2022. 08. 02.
3차 외부 전문가	내용학 교수 1명, 교과교육학 교수 1명, 고등학교 교사 3명	2022. 08. 16. - 2022. 08. 26.
4차 외부 전문가	고등학교 교사 3명	2022. 10. 01. - 2022. 10. 11.

외부 전문가의 내용학 교수가 바라보는 법학적 관점, 교과교육학 교수가 바라보는 사회교육학적 관점, 중학교 교사가 바라보는 계열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 고등학교 교사가 바라보는 현장 적합성 면에서의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과정 검토 의견을 받고 수정 및 보완이 진행되었다.

Ⅱ. 법과 사회 교육과정 개발 방향

1. 교육과정 개발 시 고려사항

고등학교 교육과정 관련하여 합동 워크숍을 통하여 교육과정 각론 개발을 하면서 기본 고려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교수와 교사가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법 영역의 내용 체계 측면과 학교 현장에서의 행정적인 부분 또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이에[1] ⅰ) 교과(군)별 과목의 성격, 과목 간 연계 및 위계를 사전 연구를 통해 검토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법 영역과 고등학교 공통과목인 통합사회 과목에서의 법 영역 간의 연계 및 위계를 고려하였다. ⅱ) 학습량 적정화 및 과목별 기본이수학점 기준을 고려하여 개발이 이루어졌다. 기존 정치와 법 과목에서는 총 6개 영역에서 18개의 성취기준으로 개발되었다. 이번 법과 사회 과목은 학교 현장에서의 학점제를 고려하여 총 4개 영역에서 13개의 성취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ⅲ)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 제시하고 있다. ⅳ) 기존의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2).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책연구진 합동 워크숍 연구자료 ORM 2022-1. pp. 31-33.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닌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과목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법 영역과 관련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법과 사회 과목의 목표

이번 법과 사회 과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양상을 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법적 문제를 선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사법과 입법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력,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협력적 소통 등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세부 사항으로 (ⅰ)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사법(私法)의 일반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이해한다. (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와 양자의 관계, 국가 운영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 법체계와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ⅲ) 헌법의 의의와 기본권의 내용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문제 해결력, 의사 결정력 등을 기른다. (ⅳ)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등을 찾는 정보 활용 능력을 길러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ⅴ) 학교생활에 있어서 건전한 시민 의식과 법적 사고력을 기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3. 교육과정 내용 선정과 조직

1) 법교육의 관점에서 핵심 아이디어와 핵심 개념의 재선정

법교육의 관점에서 법과 사회가 다루어야 할 핵심 아이디어를 다시 선정하였다. 그 결과 국가-사회 구별론을 전제로 사회는 사적 자치 원리에 따라, 국가는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전제로, 각 원리의 적용되어야 할 관념적 영역과 핵심 내용, 노동문제, 빈곤과 질병, 독과점 심화 등 현대에 들어 발생한 새로운 사회문제의 발생과 그 해결을 위하여 등장한 복지국가 원리,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법의 등장과 사적 자치 원리의 수정, 권리-의무로 구성된 법률관계, 사이버공간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매개로 한 새로운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와 그 대응 등을 핵심 아이디어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핵심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적 자치 원리,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복지국가 원리, 권력분립 원리, 죄형 법정주의, 권리, 권한, 의무, 책임, 계약, 불법행위, 기본권, 범죄, 형벌 등을 핵심 개념으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핵심 아이디어와 핵심 개념으로 구성된 내용 요소를 학습하면 법에 대해 이해하고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으며, 법 관련 분야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진로 선택 이후 대학과 그 이후에 만나게 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법 관련 선택 과목과 영역을 나열한 것이다.

<표 3>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법 관련 과목의 영역

교육과정	과목명	영역	비고
2007 개정 교육과정	법과 사회	(1) 법 생활의 기초 (2) 국가적 생활과 법 (3) 개인적 생활과 법 (4) 사회적 생활과 법 (5) 범죄와 형사 절차	고등학교 (일반 선택)
2009 개정 교육과정	법과 정치	(1) 민주 정치와 법 (2)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3) 헌법의 기본 원리 (4) 개인 생활과 법 (5) 사회 생활과 법 (6) 국제 사회의 법과 절차	고등학교 (일반 선택)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치와 법	(1) 민주주의와 헌법 (2) 민주 국가와 정부 (3) 정치과정과 참여 (4) 개인 생활과 법 (5) 사회생활과 법 (6) 국제 관계와 한반도	고등학교 (일반 선택)
2022 개정 교육과정	법과 사회	(1) 개인 생활과 법 (2) 국가 생활과 법 (3) 사회생활과 법 (4) 학교생활과 법	고등학교 (진로 선택)

2) 학습자의 법적 경험 확장을 고려한 내용 배열

핵심 아이디어와 핵심 개념으로 구성된 내용 요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법과 사회의 단원 배열 순서는 학습자의 법적 경험 확장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가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사회집단인 가정을 가장 먼저 배치하고, 그 후 사회, 국가 생활을 하는데 법은 어떻게 행위하도록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근본 배경인 사적 자치 원리,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복지국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다음은 법과 사회의 성격에 대한 설명 중 일부이다.

> 법과 사회 과목은 개인이 출생하여 사망하기까지 가족 집단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가기관을 구성·운영함을 이해하며, 현대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탐구하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한 법적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사회과의 일부로서 법교육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학습자의 법적 경험 확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법학의 지식의 구조를 고려한 일부 변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법의 일반법(상대적으로 사적 자치 원리에 충실)인 민법의 내용은 (1) 개인 생활과 법의 [12법사01-02]와 [12법사01-03]에 배치하고, 이를 변용한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사적 자치 원리의 수정)의 내용은 (3) 사회생활과 법에 배치하였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을 지배하는 사적 자치 원리의 수정 필요성과 그 방법, 한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복지국가 원리 등 국가 생활에서 만나는 공법의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학습자가 국가 이전에 본격적으로 접하는 학교라는 생활 영역에서 만나는 법적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내용을 국가 생활과 법 이전이 아닌 이후에 배치하였다. 학교생활에서 만나는 법적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 공법, 사회법의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공법 중 하나인 형법을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사회생활과 법(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5) 사회생활과 법에 배치)에 배치하지 않고 (2) 국가 생활과 법에 배치하였다. 형법이 적용되는 영역보다는 형법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의 본질(법치주의 원리의 구체적 적용과 그 한 내용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심화된 현대 사회를 사는 학습자를 고려하였을 때 국제 생활에서 만나는 법적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내용도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다루어야 하고 다루고 싶었다. 그에 적용되는 법의 대원칙도 달라 부분적이라도 설명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학습자의 학습량 경감,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인 「국제 관계의 이해」와 기능 분담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과 사회는 개인(가정 → 민법이 규율하는 사회) → 국가 → 사회법이 규율하는 사회 → 학교 순서로 구성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림 1]과 같은 흐름으로 영역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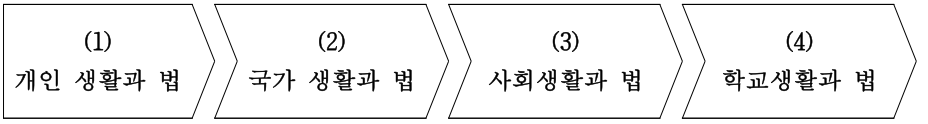

[그림 1] 법과 사회 영역 순서

3) 나선형 교육과정의 존중과 이에 따른 조정

법과 사회 과목의 교육과정 조직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의 법 영역의 내용 요소를 고려하였다. 법교육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내용의 단순한 반복을 피하면서 타당성, 중요성, 적합성, 내구성, 균형성 등을 고려하였다(모경환·차경수, 2021: 96). 그 결과 인권 보장, 국회와 행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법의 의미와 목적, 재판의 종류 등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다. 그리고 권력분립 원리, 권리와 의무 등의 내용은 확대하고 심화하였다. 그리고 법치주의, 복지국가 원리, 현대적 법률관계, 지적 재산권과 같이 그 실체는 학습되어 왔으나 그 개념을 실체와 연결하여 분명하게 안내하지 않았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4) 법학의 최신 동향과 현대적 법률관계의 반영

법과 사회의 교과 내용학인 법학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현대적 법률관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성취기준에 반영하였다. (3) 사회생활과 법 영역에서 [12법사03-03]에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과 지적 재산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고 토론한다.”라고 제시하여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 ‘지적 재산권’의 학습 요소를 추가하고 이러한 학습 요소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사례를 찾아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학문의 최신 동향을 교육과정에 도입할 때 늘 겪게 되는 어려움인 논의 주제의 분산, 정설의 미정립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취기준 해설에서 이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매개로한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을 살펴본다. 현대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플랫폼 노동의 보호,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그 한계와 같은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고 제한하였다. 그리고 성취기준을 제시할 때 기능동사를 ‘토론한다’로 제시하여 그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사회과의 목표와 법학의 최신 동향을 고려한 입법교육의 도입

이번 법과 사회 과목에서는 전통적인 법교육에서 중시한 법해석론 교육을 유지하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교육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수용적 법교육을 넘어 형성적 법교육을 지향하였다.

형성적 법교육이란 “민주적 법치사회의 구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법의식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편적 정의와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규범이나 법적 가치 등을 학습자 스스로 형성해 보는 경험을 강조하는 법교육 패러다임”(송성민, 2014: 31-32)이다. 이와 같은 형성적 법교육은 사회과의 한 내용 요소로서 법이 지니는 사명인 사회과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방평일 뿐 아니라 현대 법학의 최신 동향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12법사02-04]에서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법적 문제 해결 과정을 탐구하고, 사법의 의미와 한계를 인식하고 입법론적 해결의 필요성을 탐구한다.”고 제시하고, [12법사04-03]에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등을 찾아보고, 민주시민으로서 나와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6)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법과 사회 과목의 역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와 법’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었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법과 사회’ 과목, ‘정치’ 과목으로 분리되면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닌 진로 선택 과목이다.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의 개발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과 내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개발하고 있다. 이에 각 영역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해당 영역과 관련된 진로 직업(군)을 소개하고 있다.

<표 4> 법과 사회 영역의 관련 직업(군) 소개

영역	관련 직업(군) 소개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1) 개인 생활과 법	법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부동산중개인, 주택관리사, 법원 공무원 등
(2) 국가 생활과 법	법관, 검사, 변호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경찰관, 행정부 공무원, 법률사무원 등
(3) 사회생활과 법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사회단체활동가, 사회복지사, 정보보호전문가, 변리사, 감정평가사, 근로감독관 등
(4) 학교생활과 법	법관, 검사, 변호사, 교사, 경찰관, 상담전문가 등

Ⅲ. 영역에 대한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해설

1. 개인 생활과 법

개인 생활과 법 영역에서는 학습자의 법적 경험 확장을 고려하여 가족 관계 형성을 통해 발생하는 혼인, 출생, 상속 등을 학습한다. 그리고 개인 간의 법률관계인 사법의 일반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이해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람과 사람 간의 채권 관계와 물건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고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탐구한다.

개인 생활과 법 영역의 성취기준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외부 전문가, 국민채널소통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논의되었고 일부 의견은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5> 외부 전문가 및 국민소통채널 등에서의 의견 (1)

구분	내용	비고
A 교수	개인생활과 법에서 가족관계의 기본적 내용과 사적자치가 연결되는 것인지 분리되는 것인지, 가족관계에는 사적자치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임.	외부 전문가 1차 자문
B 교수	개인생활과 법 영역에 ‘불법행위와 손해 배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국가 생활과 법 영역의 ‘범죄의 성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외부 전문가 1차 자문
C 교수	“[12법사01-03] 물건 등(부동산, 동산, 디지털정보)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에서 디지털정보는 법학적으로 물건으로 완전하게 인정되는 개념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외부 전문가 2차 자문
c 교사 (고등학교)	성취기준 [12법사01-01]과 [12법사01-02]의 위치 변경 : 혼인, 이혼도 일종의 법률관계입니다. 처음부터 혼인을 배우는 것보다는 계약관계의 내용을 배운 후에 가족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방안을 제안함.	외부 전문가 2차 자문
D 교수	‘개인생활과 법’ 영역을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큰 아이디어가 관통, 지배하는 것으로 서술되었는데 가족법은 재산법과 그 핵심원리를 달리함. 재산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으로 설명하더라도 문제가 적지만, 가족법에 있어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아닌, ‘가족제도의 보전과 유지’가 핵심적 가치임(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제2판, 3-9면, 특히 8면 참조). 사적 자치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인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존중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중 어느 것도 가족법과 큰 관계가 없음. 아울러 예컨대, 혼인할지에 대한 여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지만(그 자체도 근친혼 불가, 중혼 불가, 연령상의 제	외부 전문가 3차 자문

구분	내용	비고
	한 등이 있습니다.), 혼인의 요건, 혼인의 법률효과, 부모와 자의 관계, 친권 등 어느 것도 당사자가 자유로이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없음(강행규정성). 헌법 규정상으로도 사적 자치의 원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제10조)에 근거를 가지지만, 제가 아는 한, 가족제도는 헌법 제36조에 의해 특별히 보장됨. 그밖에 상속에서도 사적 자치의 원칙이 관철되는지에는 의문이 있음.	
D 교수	3. 4면의 '나. 성취기준' 중 '(나)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 두 번째 "· 사람이 죽으며 ~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음. 우리 상속법에 대해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유산처분의 방법으로 유증만을 인정할 뿐 유언상속은 인정되지 않고 상속으로는 법정상속만 인정되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는가 하면(송덕수, 신민법강의, 제13판, E-269, E-175/윤진수, 앞의 책, 291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고 법정상속은 2차적·보충적이라는 설명도 있음(지원림, 민법강의, 제19판, [6-130]). 전자가 가족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다수설이고, 또 우리 민법 상속편을 보면, 제1장. (법정)상속이 먼저 나오고, 제2장. 유언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후자의 설명은 사실 설득력이 떨어짐.	외부 전문가 3차 자문
D 교수	과거에는 호주상속 제도 때문에 신분상속이 인정되었지만, 호주제도의 폐지에 의해 현재에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 상속은 재산상속만 남았음을 제시해야 함.	외부 전문가 3차 자문
e 교사 (고등학교)	1. 개인생활과 법에서 민법 3조(권리능력) 내용 추가	외부 전문가 3차 자문
i 교사 (고등학교)	성취기준에서 '법률 관계'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법률 관계'로 통일하여 기술하는 윤문 의견 드림. 아래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블릿 2.'에서도 마찬가지임.	외부 전문가 4차 자문
j 교사 (고등학교)	성취기준 해설에서 타인에게 위법행위를 한 자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 사이에 이해득실을 조정하는 불법행위를 이해하고로 되어 있는데 불법행위 이외에도 손해배상을 내용 요소로 포함해야 하는 의견 드림.	외부 전문가 4차 자문

이러한 외부 전문가 및 국민소통채널 등에서의 의견을 거쳐 개발된 개인 생활과 법 성취기준은 <표 6>과 같다.

<표 6> (1) 개인 생활과 법 성취기준

[12법사01-01]	가족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혼인, 출생, 상속 등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1-02]	채권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계약, 불법행위 등과 사적 자치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1-03]	물권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부동산·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능과 특징,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는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개인 생활과 법 영역에서는 법과 사회 교육과정 첫 번째 영역으로 학습자의 법적 경험 확장을 고려하여 가족 관계 형성, 채권, 물권 등 사적 자치부터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성취기준 해설을 살펴보면 [12법사01-01]에서는 우리 삶의 기초인 가족관계(부부, 부모와 자녀 등)를 이해한다. 두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혼인과 부부 관계, 출산·입양으로 형성되는 부모와 자녀 관계(친자 관계, 친권)에 초점을 맞춘다. [12법사01-02]에서는 채권 관계를 다룬다. 물건의 자유로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 관계를 통해 채권의 기능과 개인과 개인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이해한다. 그리고 타인에게 위법행위를 한 자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 사이에 이해를 조정하는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에 이를 적용하여 해결한다. [12법사01-03]에서는 물권 관계를 다룬다. 우리 삶에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중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법(률)관계가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에 이를 적용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물권 영역을 지배하는 원칙임을 이해한다.

2. 국가 생활과 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권력 분립의 원리를 탐구한다.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헌법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한다. 국가나 공공 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 형벌의 종류, 형사 절차를 탐구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인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법적 문제 해결 과정을 탐구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해결에 적용한다.

국가 생활과 법 영역의 성취기준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외부 전문가, 국민채널소통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논의되었고 일부 의견은 <표 7>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7> 외부 전문가 및 국민소통채널 등에서의 의견 (2)

구분	내용	비고
A 교수	국가생활과 법에서 특히 '[12법사03-03]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 형사 절차를 탐구한다.' 의 내용요소가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되지만 분량이 다른 단원에 비해 많다고 봄.	외부 전문가 1차 자문
a 교사 (중학교)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성 차원에서 '국가 생활과 법'을 먼저 학습하고 개인생활과 법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음.	외부 전문가 1차 자문
C 교수	"[12법사03-0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한다." 에서 기본권 제한, 제한의 한계에 대한 진술이 성취기준에도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임.	외부 전문가 2차 자문
C 교수	성취기준 해설 중 "[12법사03-04]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중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입법·행정과 구분되는 사법(司法)의 특성을 이해한다." 에서 헌법재판소를 사법기관으로 공식화해도 되는지(가령 헌법 제101조 등) 검토 필요함.	외부 전문가 2차 자문
e 교사 (고등학교)	헌법과 형법 단원 분리하여 범죄와 권리 보호(형법), 국가와 인권(헌법) 영역으로 의견 제안함.	외부 전문가 3차 자문
e 교사 (고등학교)	국가 생활과 법에서 현재 제시한 내용 요소 구성상 다른 단원에 비해 내용 요소가 너무 많음.	외부 전문가 3차 자문
○○ 교사 (고등학교)	국가 생활과 법에 내용 요소가 많음.	내부 교차 검토
◇◇ 교수	기본권 요소를 성취기준으로 구체화할 때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다룰 것을 제안함.	내부 교차 검토
외부 의견	학습량 적정화 권고됨.	핵심 교원 연수
g 교사 (고등학교)	국가생활과 법: [12법사03-0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권력분립 내용의 성취 기준 삭제를 제안함. 중학교 교육과정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학습해온 내용이며 정치와 더욱 밀접한 내용임.	외부 전문가 3차 자문

이러한 외부 전문가 및 국민소통채널 등에서의 의견을 거쳐 개발된 국가 생활과 법 성취기준은 <표 8>과 같다.

<표 8> (2) 국가 생활과 법 성취기준

[12법사02-0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권력 분립의 원리를 탐구한다.
[12법사02-0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12법사02-03]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 형사 절차를 탐구한다.
[12법사02-04]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적 문제 해결 과정을 탐구하고, 사법의 의미와 한계를 인식하여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를 탐구한다.

국가 생활과 법 영역에서는 기존의 헌법과 형법을 영역으로 분리하였는데 헌법과 형법을 한 영역에서 공법을 다루도록 하였다. 성취기준 해설을 살펴보면 [12법사02-01]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이해한다. 권력 분립의 원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이 채택한 세부 원리 중 하나임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12법사02-02]에서는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헌법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나타난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우리나라 헌법이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고 어떤 경우에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사례를 통하여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12법사02-03]에서는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형법의 의의, 범죄의 의미와 형벌의 종류를 이해하고, 형사 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원리와 제도를 이해한다. 인권보장을 위해 법치주의가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한다. [12법사02-04]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중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입법·행정과 구분되는 사법(司法)의 특성을 이해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지 탐구하면서 사법의 의미와 한계를 인식하고 어떤 경우에 입법론적 해결 방법이 필요한지 탐구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3. 사회생활과 법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여러 법 중에서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을 탐구한다. 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해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과 경제 정책 관련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탐구한다.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 지적 재산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쟁점을 분석하고 토론한다.

사회생활과 법 영역의 성취기준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외부 전문가, 국민채널소통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논의되었고 일부 의견은 <표 9>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9> 외부 전문가 및 국민소통채널 등에서의 의견 (3)

구분	내용	비고
B 교수	사회생활과 법 영역에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의 영역에 대한 학습을 이해서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외부 전문가 1차 자문
c 교사 (고등학교)	법률관계를 통해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와 공법적 법률관계를 배운 후, 환경 확대법을 적용하여 '학교 생활과 법 → 사회 생활과 법'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함.	외부 전문가 2차 자문
d 교사 (중학교)	청소년 보호법, 소비자기본법, 국제법의 내용 요소가 없음.	외부 전문가 2차 자문
△△ 교사 (고등학교)	'지적 재산권'은 '지식 재산권'으로 수정 제안함.	내부 교차 검토
외부 의견	지적 재산권을 지식 재산권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핵심 교원 연수
외부 의견	노동교육의 삭제 또는 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를 대립과 억압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제안함.	국민 소통 채널
외부 의견	노동 용어 사용을 근로로 대체	국민 소통 채널
f 교사 (고등학교)	민법, 형법, 근로 기준법 등을 학습한 후 학교생활을 포함하여 미성년자, 소년법상 형사 미성년자, 근로 기준법의 연소 근로자 등을 모아서 다루는 방안 제시함.	외부 전문가 3차 자문
i 교사 (고등학교)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은 지식 재산 기본법 개정(2011.5.19.)에서 '지식 재산권'으로 개정되었음. 해당 부분 포함하여 이후 동일 진술에서도 모두 '지식 재산권'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외부 전문가 4차 자문
k 교사 (고등학교)	'노동자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 혼용되어 하나로 통일 의견 드림.	외부 전문가 4차 자문

이러한 외부 전문가 및 국민소통채널 등에서의 의견을 거쳐 개발된 사회생활과 법 성취기준은 <표 10>과 같다.

<표 10> (2) 사회생활과 법 성취기준

[12법사03-01]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3-02]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과 경쟁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탐구하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공 쟁점을 찾아 토론한다.
[12법사03-03]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과 지적 재산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의 사례를 찾아보고 관련 쟁점을 토론한다.

사회생활과 법에서는 사회법 이외에도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과 지적 재산권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 성취기준 해설을 살펴보면 [12법사03-01]에서는 노동법을 통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탐구한다. 이때 청소년(연소자)이 근로 계약을 맺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탐구한다. 12법사03-02]에서는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소비자 보호, 독과점 규제 등 다양한 경제 관련 제도를 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쟁점을 도출하여 토론한다. 12법사03-03]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매개로 한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을 살펴본다. 현대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플랫폼 노동의 보호, 지적 재산의 보호와 그 한계와 같은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4. 학교생활과 법

학교생활에서 시민과 학생으로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어떤 대응 관계에 있는지 분석한다. 학교폭력의 사례를 통해 학교생활에서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등을 찾아보면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한다.

학교생활과 법 영역의 성취기준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외부 전문가, 국민채널소통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논의되었고 일부 의견은 <표 11>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11〉 외부 전문가 및 국민소통채널 등에서의 의견 (4)

구분	내용	비고
A 교수	개인생활, 학교생활, 국가생활, 사회생활로 구분한 것이 이해가 되지만, 이 가운데 학교생활은 분량이나 내용요소가 학교생활과 적절히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외부 전문가 1차 자문
B 교수	학교생활과 법 영역의 지식·이해에서 안전권과 환경권이 포함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외부 전문가 1차 자문
C 교수	학교생활과 법을 '일생생활과 법' 내지는 '일상생활 속 법' 정도로 제목을 변경하고, 1단원으로 보낸 다음, "기초법학 내용+학생들의 생활법"으로 구성을 제안함.	외부 전문가 1차 자문
C 교수	학교생활을 독립된 대단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나, 제한된 4개 단원 체제에서, 기초법학에 대한 내용이 너무 소홀해 지는 것이 우려됨.	외부 전문가 1차 자문
a 교사 (중학교)	학교생활과 법에서 환경권은 사회생활과 법으로 이동이 필요함.	외부 전문가 1차 자문
c 교사 (고등학교)	법률관계를 통해 사법적(私法的) 법률관계와 공법적 법률관계를 배운 후, 환경 확대법을 적용하여 '학교 생활과 법 → 사회생활과 법'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함.	외부 전문가 2차 자문
e 교사 (고등학교)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분을 1장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계약과 불법행위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됨.	외부 전문가 3차 자문
e 교사 (고등학교)	2장 '학교생활과 법'에 대한 의견으로 교육과정 구성 상 다른 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 내용이 적음. 학교생활과 법을 영역이 아닌 사회생활과 법 영역으로 이동 제시함.	외부 전문가 3차 자문
□□ 교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률, 판례 등을 찾아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은 4단원만이 아니라, (1)~(3) 단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서 해야 할 활동으로 보임.	내부 교차 검토
e 교사 (고등학교)	둘째,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 관심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생활과 법 단원에 배치하는 것이 적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외부 전문가 3차 자문
f 교사 (고등학교)	두 번째 영역이 '학교생활과 법'인데, 위치를 맨 마지막으로 옮기고 '청소년과 법'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외부 전문가 3차 자문
f 교사 (고등학교)	지식 · 이해 측면의 내용 요소 중 안전권과 환경권과 이 영역의 관련성이 약해 보임.	외부 전문가 3차 자문

구분	내용	비고
f 교사 (고등학교)	‘학교생활과 법’의 지식·이해 측면의 내용 요소 중에서 ‘권리, 의무’, ‘사회생활과 법’의 지식·이해 측면의 내용 요소 중에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가 왜 해당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었음. 모든 영역에서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권리, 의무’는 첫 번째 영역 ‘개인 생활과 법’에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 때문임.	외부 전문가 3차 자문
h 교사 (고등학교)	[12법사04-04]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법적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성취기준이라 판단됨. 다만 이러한 사항은 특정 단원의 특정 성취기준에만 제시될 것이 아닌, 각 단원에 대한 학습에 있어서 항상 강조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됨.	외부 전문가 3차 자문

이러한 외부 전문가 및 국민소통채널 등에서의 의견을 거쳐 개발된 학교생활과 법 성취기준은 <표 12>와 같다.

<표 12> (4) 학교생활과 법 성취기준

[12법사04-01]	학생과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학교와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4-02]	학교폭력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며, 학교생활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12법사04-03]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등을 찾아보고, 민주시민으로서 나와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성취기준이 개발되며, 사례는 성취기준 해설 또는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교수학습 및 평가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학교생활과 법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과 달리 사례를 성취기준에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12법사04-02] 학교폭력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고 제시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성취기준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 생활 사례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2법사04-03]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등을 찾아보고, 민주시민으로서 나와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태도

를 가진다.” 성취기준이 학교생활과 법 영역에서 적정한지, 전체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교수학습 및 평가에 다루는 것에 대한 외부 검토의 의견이 있었다. 학교생활과 법 영역에서는 시민과 학생으로서의 권리의 의무를 이해하고 학교폭력의 사례를 통해 학교생활에서 법적 문제를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하며,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성취기준 해설을 살펴보면 [12법사04-01]에서는 학생과 청소년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학교의 권한과 의무를 살펴본다. 성년인 시민과 비교하여 학생과 청소년이 왜 특별한 보호와 제한을 받는지 학습하고 그러한 특별한 보호와 제한이 적절한지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12법사04-02]에서는 법, 교육, 윤리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되는 다양한 해결 수단을 파악하고 그 중 법적 해결 방안이 가지는 특징을 이해한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민법, 형법, 행정법적인 노력을 탐구하고 그것이 가지는 효과와 한계를 학습한다. 학교 규칙 개정, 휴대전화 사용, 교권 침해 등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12법사04-03]에서는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를 찾고, 이에 근거해 당면한 사회문제를 법해석과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법이 가지는 유용성과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가진다.

Ⅳ. 결론: 논의 및 제언

법과 사회 교육과정은 사회과의 본질적인 목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양성에 이바지하는 과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이번 법과 사회 과목은 법교육의 관점에서 핵심 아이디어와 핵심 개념의 재선정, 학습자의 법적 경험 확장을 고려한 내용 배열, 나선형 교육과정의 존중과 이에 따른 조정, 법학의 최신 동향과 현대적 법률관계의 반영, 사회과의 목표와 법학의 최신 동향을 고려한 입법교육의 도입,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법과 사회 과목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였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법과 사회’로 과목명이 개발되었다. 다음 교육과정에서 일반 선택 과목 또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법 관련 과목이 개발된다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법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법’ 또는 ‘법’ 과목명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으로

‘국제 사회와 국제법’, ‘시민과 헌법’, ‘법과 윤리’, ‘법철학’ 등 학생들이 융합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법 내용 요소를 다루는 사회과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인 법과 사회 과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있어서 지난 교육과정과 현행 교육과정 연구와 설계자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교육과정 개발에 이어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법과 사회’ 과목에 이어 다양한 과목이 개발되어 학교 현장에서 법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대현(2016). 교육과정 개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반성적 성찰 -2015 개정 '정치와 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1(1), 01-42.

교육부(2015).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교육부(2021). **2025년, 포용과 성장의 고교 교육 구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2021.2.17.).

교육과학기술부(201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7].

교육인적자원부(2007).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7].

김범주·최병모·최인화·전석재(2005).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학사.

김왕근·박성혁·이병하·곽한영·김현철·배화순(2022). **고등학교 정치와 법**. 천재교과서.

김정오·최봉철·김현철·신동룡·양천수(2017). **법철학 이론과 쟁점**. 박영사.

남효순(2014).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분석과 개선 모색 -민사법 분야-. **법교육연구**, 9(3), 01-39.

모경환·강대현·은지용(2016).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쟁점. **시민교육연구**, 48(1), 1-30.

모경환·원준호·정상우·박정서·황미영·김자영(2022). **고등학교 정치와 법**. 금성출판사.

박상준(2003). 법교육 교육과정 구성기준에 관한 시론. **교육과정평가연구**, 6(2), 257-286.

박성혁·김해성·김현철·곽한영·오승호·김자영(2013). **법교육학입문**. 서울:GMW.

박용조(2011). 초등 사회과에서 법교육의 적용과 변천 - 미국 법교육이 주는 시사-. **사회과교육연구**, 18(1), 19-33.

법무부(2019).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배화순(2017). 사회과 교육과정의 변화와 법교육. **법교육연구**, 12(1), 49-82.

서범석·나혜영·김증록·최승태·정옥균·최서윤(2022). **고등학교 정치와 법**. 지학사.

송성민(2010). 사회과 선택교육과정 통합의 전략 연구 - '법'과 '정치'에서, '법과 정치'로 -. **법교육연구**, 5(1), 119-143.

송성민(2014). 대안적 법교육 패러다임의 제안 - 형성적 법교육의 의의와 효과. **법교육연구**, 9(1), 27-64.

은지용·정필운(2017).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시민교육연구**, 49(3), 45-78.

이경호·손영찬·이철욱·김태은·강윤식·주혜경(2021). **고등학교 정치와 법**. 미래엔.

이대성(2007). 2007 개정 법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 '법과 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 **사회과교육연구**, 14(4), 47-69.

정인섭(2014).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분석과 개선 모색 -국제법 분야 -. **법교육연구**, 9(3), 117-151.

정필운·은지용(2017). 법치주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사회과에서 법치주의 관련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과인권교육연구**, 10(2), 119-152.

정필운·이준현·전용주·김혜경·안성경·주종진·황재성·이수경·양지훈(2022). **고등학교 정치와 법**. 비상교육.

정필운·양지훈(2021).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제177차 정기학술대회 발표 자료.

정필운·양지훈(2022).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22년도 연차학술대회 발표 자료.

차경수 · 모경환(2021). **사회과교육**. 서울: 동문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2).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책연구진 합동 워크숍 연구자료 ORM 2022-1.

한인섭(2014).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의 분석과 개선 모색 -형사법 분야 -. **법교육연구**, 9(3), 229-253.

홍익표·진시원(2012). 헌법에 대한 정치학적 접근: 정치교육과 법교육의 교차지점인 헌법교육을 위한 하나의 시론. **법교육연구**, 7(2), 203-229.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www.ncic.re.kr) (검색일 : 2022. 10. 19.)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법과 사회> 교과의 전망*

정상우(인하대학교 교수)·강은영(인하대학교 강사)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 과정
1. 법교육의 의의 및 성격
2. 법교육의 발전 과정과 <법과 사회> 과목의 변천
3. 평가
Ⅲ. <법과 사회> 교과 변화에 대한 분석
1. <법과 사회> 교과 부활의 배경과 특징
2.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분석
Ⅳ. <법과 사회> 교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법교육의 정체성 회복 노력
2. <법과 사회> 과목 운영상의 노력
3.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
4. 범교과 학습과 생활지도 등을 통한 법교육
Ⅴ. 결론

Ⅰ. 서론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과 같은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기조 하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이 발표되었다(2021년 11월 24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의 성장을 비전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지역·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을 개정 중점사항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편도 추진되었다. 사회과의 교과역량은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 미완성 원고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으로 설정되었다. 고등학교 사회과에서는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공통과목은 유지하고, 선택과목의 경우 적정화라는 명목하에 일반 선택과목은 <사회와 문화> 1개 교과만으로 구성하였으며, <법과 사회>,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이해> 과목은 진로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고, 융합선택과목으로는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이 구성되었다. 2022 교육과정에서 법영역 구성의 가장 큰 변화는 <법과 사회>로 정치 영역과 분리 및 독립되어 신설되었다는 점과 진로선택과목으로 편제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에 학교법교육에서 법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고, 법문화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회법교육이 활성화되었다. 한국법교육학회(2006년~),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2008년~)가 창립된 이후 법교육 연구 성과도 방대하게 축적되었으며, 사회에서도 법정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콘텐츠 제작과 법률문제와 관련된 뉴스들이 급증했다는 보고들이 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 마련 과정에서 법교육학계에서는 법교육의 후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야 했을 정도로 법교육에 대한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1)]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과정에 역사적 검토를 통해 현재 법교육의 상황을 분석하는 기반을 삼고자 한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교과 부활의 특징을 검토하고 문제점은 있지 않은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편 후의 학교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법교육 자체의 특성과 과목 운영, 교사들의 역량 강화 등의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2022 개정 <법과 사회>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 과정[2)]

1. 법교육의 의의 및 성격

일반적으로 중등교육에서 법교육이라고 하면 사회과에서 법 영역의 교육을 의미한다. 사회과는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법 영역은 특히 제7차 교육과정 이후로 어느 정도 독립된 영역으로 체계화되어 왔다. 그 이전의 법교육은 사실 독자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1) 법교육학회(2021. 8. 4), 법과인권교육학회(2021. 7. 29), 한국헌법학회(2021. 8. 9), 법과사회이론학회(2021. 8. 10) 등은 법교육의 축소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 이 장의 내용은 법무부(2020)의 「사회변화에 대응한 법교육 혁신 방안 연구」 보고서를 일부 전재하거나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헌법교육을 중심으로 정치교육에서 다루어진 경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법교육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인데, 미국의 법교육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법교육지원법은 1978년 제정되었는데, 크게 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법교육지원법 제3001조에는 법의명칭(title), 법제정의 목적과 배경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법과 법교육 기관들이 수행하는 법교육이 사회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둘째, 법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인식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교양있고 책임 있는 시민(knowledgeable, responsible citizen)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연방차원에서 법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을 통해 법교육을 "법, 법적 절차, 법체계, 그리고 이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기본원리와 가치들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갖출 수 있게 비법률가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정순원, 2011: 86).

우리나라의 법교육도 이러한 의미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혁(2006)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법적으로 생각하는 힘(법적 사고력)과 법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문제해결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조직적 학습 경험이라고 한다. 법교육은 법전문가가 아닌 학생, 일반인들을 상대로 법적 기초 소양과 법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법학교육과 다르다(곽한영, 2006: 3).

초창기 본격적인 법교육 도입 당시 언급된 법교육의 '일반목표'는 다음과 같다(최인화, 1992: 175). "법률현상에 관한 법개념과 이론을 익혀 이를 현실의 법생활에 활용토록 하여 개인 및 타인의 권리와 공공복리를 존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법적사고력을 발휘하여 정의실현과 준법을 생활화하는 자세를 기른다." 그리고 2008년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에서는 법교육을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교육에 관한 정의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1990년대 이후이고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그 이전에 법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서 시작된 교수요목기에는 공민과가 공민, 지리, 역사로 편성되고 다시 공민에서 정치편, 경제편, 윤리철학으로 나뉘었는데, 정치문제 교과서 중 약 80%가 헌법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헌법교육을 법교육의 일부라고 한다면 법교육은 해방 이후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이미 본격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법교육을 생활법교육에 가까

운 의미로 이해한다면, 일반 시민생활 또는 생활법교육과 관련된 법교육은 6차교육과정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하였다.헌법교육의 성격은 생활법교육이라기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법교육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사회과 교육의 일부로 헌법교육이 다루어져 왔지만,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법교육이 시작된 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법과 사회>가 채택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전의 법교육은 헌법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생활법 분야에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과교육 또는 준법교육으로 이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김각, 1995; 전석재, 1999; 최인화, 1992). 따라서 법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에서는 준법교육,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정치교육으로서 헌법교육이 중심이었다. 법교육이 체계적으로 등장한 것은 <법과 사회> 교과목이 도입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법교육에 대한 연구 역시 <법과 사회> 교과서에 대한 집필과 연구가 시작된 2000년대 초반부터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학교법교육이 사회과, 그 가운데에서도 정치교육의 일부로 취급되어 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초기 법교육은 어떤 면에서 헌법교육이 중심 내용을 이루었다. 정치교육의 일부로서 인권교육과 민주주의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교육이라는 명칭 부여도 최근에 와서야 가능했다. 법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시도된 것은 헌법교육 이외에 생활법교육에 대한 강조가 시작되면서였다고 할 수 있다. 법교육이 독자적인 교과 영역으로 자리잡으면서 정치교육과 법교육의 구분이 활발해졌다.

2. 법교육의 발전 과정과 <법과 사회> 과목의 변천

우리나라 법교육 발전의 역사를 회고해보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도입 이전의 시기,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시기,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잠재기: 교수요목기~제7차 교육과정 이전 (1946~1996)

교수요목기(1946~1954)부터 법교육이 사회과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헌법 내용을 중심으로 법교육이 이루어졌다. 제3차 교육과정(1973~1981)에 이르러서야 헌법 이외에 사법 영역이 사회과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회교과의 교과목 편제의 변경이나 정치 과목과의 관계 혹은 경제 과목의 강화에 따라 법교육의 내용요소에 다소 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법교육의 위상이 강화된 것은 아니었다(곽한영, 2006: 8).

2) 독립기: 제7차 교육과정 이후~「법교육지원법」 제정 이전 (1997~2007)

법교육의 내용요소들은 제7차 교육과정(1997~)에 이르러서야 체계화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6학년에 헌법의 기초적 내용과 인권 교육 내용이 포함되고, 중학교 2학년(국민공통교육과정 8학년)에 법 관련 기초이론이 포함되었으며, 〈법과 사회〉 과목이 신설됨으로써 독립적인 법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법과 사회〉의 교과 성격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밑줄 강조는 필자).

> '법과 사회' 과목은 법치 사회를 실현하고, 당면한 법적 문제 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 과목이다. 이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사회' 과목의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6학년), '사회 생활과 법 규범'(8학년)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심화시키는 과목의 성격을 가진다.
>
> '법과 사회' 과목은 법의 일반 원리, 공법·사법·사회법 체계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쟁점과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 요소인 **법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및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육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 '법과 사회' 과목에서는 사회 **생활 속에서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현상에 대한 합리적 분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며, **법치주의의 원리와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법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생활법 과목으로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가 신설되었다. 이 시기 실질적 의미의 법교육은 공통과정 사회에서 빠지고 대신 헌법 영역은 정치 과목에서, 생활법 영역은 신설된 〈법과 사회〉 과목에서 교육하게 되었다(박성혁, 2006: 67).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 초판은 2003년 3월 발행되었다. 2005년부터 법무부는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교육연구위원회'를 발족하였고, 각종 생활법 교재 편찬과 고등학생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특히 2005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산하에 법교육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법교육 전문연구기관이 탄생하였다.

학계에서는 2006년 5월 한국법교육학회, 그리고 연이어 2008년 9월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가 창립되었다. 두 학회에서는 각각 학술지 『법교육연구』와 『법과인권교육연구』를 발간하면서 법교육의 이론 연구와 법교육 확대를 선도해 왔다.

3) 조직화 시기: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시기 (2008~현재)

「법교육지원법」은 일반국민에 대한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28일 제정되었다.

「법교육지원법」에서는 법교육을 청소년 및 일반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관련된 일체의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국가는 법교육 지원을 위하여 법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법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법무부장관은 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법무부는 법질서선진화과를 중심으로 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왔다. 법교육위원회 구성,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법교육센터를 자녀안심 재단 산하에 설치, 솔로몬 로파크 설립 등은 법교육 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법무부는 『한국인의 법과 생활』, 『청소년의 법과 생활』 등 다수의 법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학생자치법정 운영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초·중·고등학교에 확산시키기도 하였다.

이 법 제정 이후 법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에서도 법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된 것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법학전문대학원법)이 2007년 제정되어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되기 시작한 것도 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회가 되고 있다. 아울러 언론과 방송에서 법학, 법교육,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등에 대한 기사와 드라마, 영화가 급증한 것도 법사회학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3. 평가

우리나라 법교육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교과목이 성립하기 이전에도 사회과 교육의 일부로서 존재하였다. 그러나 법교육의 독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고, 이에 관한 학문적 논의도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법과 사회> 교과목 출현 이전에 헌법교육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헌법교육은 미국 시민교육과 사회과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정치교육의 일부로서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화 시기 이전 헌법에 대한 교육은 헌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교육적 의의를 찾기 어려웠던 것도 하나의

한계였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장식화된 헌법으로 인해 정치교육이 터부시되는 시기이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민주시민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법교육이 독자성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이 채택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들어서 비로소 법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생활법교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에도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어 〈법과 사회〉 과목이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학교육의 축소판으로서 이루어진 점, 지나치게 어렵게 구성되어 학습분량이 많았다는 점, 교과서가 1종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점, 다른 사회과보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작았던 점 등은 한계라고 지적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법교육이 교과교육으로서 체계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법교육이 조직화된 것은「법교육지원법」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법교육지원법」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관련 학회가 조직되고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민주화 이후 제도적 안정화에 대한 요청이 많았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은 법교육의 부족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를 배경으로「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고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다양한 법교육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표 1〉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 과정

	잠재기	독립기	조직화 시기
시기	7차 교육과정 이전	7차 교육과정 이후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계기	사회과 교육에서 정치교육의 일부	〈법과 사회〉 교과 독립	법교육지원법 제정
내용요소	부분적 헌법교육 + 준법교육	헌법교육 + 생활법교육	(학교법교육) 헌법교육 + 생활법교육 /(사회법교육)
특징	정치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소외	교과서 독립 법학개론식 수업	법교육 기관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법교육이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낸 성과도 크지만, 법교육 발전과정에 있어 직면한 문제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앞두고

그리고 본격적인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기도 하다.

ⅰ) 우선 독립기 이전 헌법교육이라는 명칭이 활발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독립기 이후 특히 조직화 시기 이후 법교육 차원에서 헌법교육이 강조되면서 헌법교육이 활성화되었다. 여기에 법무부의 헌법교육 강화 정책이 큰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가정헌법 만들기, 학급헌법 만들기 등이 큰 성과를 이루었고,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헌법읽기운동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과 사회> 교과가 <법과 정치> 교과로 통합되면서 법교육으로서 헌법교육과 정치교육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인권교육·시민교육과 헌법교육 간의 관계에 대한 오해도 나타나게 되었다. 헌법교육을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 결과 정부의 의지에 따라 법교육에 대한 시각이 준법교육과 시민교육의 사이에서 부침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ⅱ) <법과 사회> 교과목 이후 생활법 교육에 대한 관심,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법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법교육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법교육센터, 법교육 관련 학회, 법교육전문강사, 교사연수 활성화 등 법교육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화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다보니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법교육의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법무부가 학교법교육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교육과정 개편에까지는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경제교육지원법」 체계 하에서 경제교육의 영향이 확대된 것과 대조된다고 하겠다. 반면에 사회법교육에 있어 법문화진흥센터가 지나치게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점도 지적받아 왔다.

ⅲ) <법과 사회> 교과의 타생으로 법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다. 그러나 <법과 사회> 교과의 내용이 지나치게 지식 위주이고 법학교육의 아류라는 성격이 크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법교육과 법학교육이 엄연히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법교육이 법학개론 중심의 교육, 이른바 헌민형 교육, 개념법학의 방법론 등으로 흐른 경향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법교육 관련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학습량이 많고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하여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조절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 법교육을 법학교육 수준에서 시도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결과 법에 대한 이해는 증가하였으나, 법교육이 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에는 여전히 한계가 나타나고 긍정적 법의식보다는 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이다. 이는 법교육 정체성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던져준다고 하겠다.

ⅳ) 법교육이 조직화되면서 교사들이 법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나 학교폭력 등과 관련해서도 법교육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져왔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사회교육과에서 법교육에 대한 비중도 증가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학교에서 교사들은 법교육에 대해 여전히 고충을 호소하기도 한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법교육의 어려움은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교육과정의 법교육에 대한 법지식의 부족이다. 최근에 와서 교대와 사대에 법학 또는 법교육 전공의 교수자들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사실 과거 교대와 사대에서 법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직무연수에서도 법교육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 둘째, 초·중등학교에서 아직 민주적 운영 또는 학생 중심의 운영이 확립되지 못해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법질서나 인권을 강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드물겠지만 학교가 민주적 운영을 등한시 할 경우 학생들의 규칙이나 권위에 대한 신뢰감은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법교육 관련 연구와 법교육 프로그램이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일선 학교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ⅴ) 법교육 활성화의 직접적 효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뉴스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법기관이 과거보다 훨씬 자주 등장하고 있다. 사법과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에 대한 의존이 급증하였다. 반면에 법치주의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법기관의 권위 하락은 법교육의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은 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법교육에 대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의 문제도 준법의식과 법교육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증가와 이른바 교권침해 현상도 법교육의 장애사유 또는 법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

ⅵ) 이외에도 세계화로 인한 외국인의 이주 증가, 온라인 환경 급증으로 인한 새로운 범죄의 출현, 코로나19로 인한 경찰, 검찰, 법원, 헌재 등 방문 교육 어려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 법교육 관련 진학 진로교육의 위기 등은 법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법교육지원법」제정 이후 법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대단히 높이 평가받고 있으나, 여전히 법교육 발전의 장애 요소들이 여전한 점에서 현재의 시점이 법교육 활성화 또는 재도약의 시기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Ⅲ. <법과 사회> 교과 변화에 대한 분석

1. <법과 사회> 교과 부활의 배경과 특징

1)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과의 변화 특징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기 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과 시민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인간상을 재구조화하였으며, 인간상과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시민성,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및 생태 감수성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래사회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을 강화하고자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에서 여러 교과 학습에 기반이 되는 기초소양을 강조하여 반영하고,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일과 노동에 포함된 의미와 가치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인간상 및 교육목표 측면에서 포용성과 시민성이 보다 강조되고,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의 함양을 강조한다.

사회과의 교과역량은 총론에서 제시한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자기주도적인 사람’과 연계하여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결정,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으로 설정되었다. 사회과 일반사회 영역은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현재 및 미래 사회의 문제나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과에서는 고교학점제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 공통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은 유지하고, 일반 선택과목을 적정화하며, 진로 선택과목의 재구조화와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의 교과재구조화를 추진하였다. 일반선택과목으로는 <사회와 문화> 단일 교과로 구성하였고, 진로선택과목에는 <법과 사회>, <정치>, <경제>, <국제관계의 이해>가, 융합선택과목으로는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이 구성된다.

<표 2>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 개편 방안 시안

교과(군)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사회 (역사/도덕 포함)	한국사 1,2	세계시민과 지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여행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주제 탐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통합사회 1,2	**사회와 문화**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현대사회와 윤리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윤리문제 탐구
			국제관계의 이해(*)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 2015 개정 교육과정 전문교과 I 의 외국어계열과 국제계열 과목을 보통교과로 재구조화한 과목임.

사회과 법 영역의 선택과목인 <법과 사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 구성되었던 정치 영역과 분리하여 진로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진로선택과목은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으로, 미래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유지하고 스스로 삶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연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 위한 과목이다. 진로선택과목의 평가방식은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성취평가제로 이루어진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과 직무역량환경 변화에 따라 법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창의성·융합성·문제해결능력 등과 같은 기초역량 중심의 법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민자 유입, 저출산·고령화, 자녀 세대의 정책 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사회 계층적 갈등 발생 및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교육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역량교육 강화, 펜데믹 이후 온·오프라인 융복합 교육 확대와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교육의 대응도 필요할 시점이다.

사회 변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교육의 방향은 법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다양한 새로운 법적 문제들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 함양을 위한 역량 중심의 법교육으로의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법교육의 내용 측면에서 현행법의 내용 이해 및 지식 중심의

법교육에서 법형성 및 활용 역량을 중심으로 한 변화, 구체적·현실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교육 주제로의 변화, 사회 구성원 간 다양한 갈등에 대비한 법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법교육의 방법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의 제공이 필요하며, 온·오프라인 융복합 법교육을 위한 방안 마련 또한 요구된다.

미래사회 법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법과 사회> 과목으로 법 영역만의 독자인 영역으로 독립한 것은 학문적 기초가 상이한 교과와의 무리한 통합적 구성에서 벗어나 법교육 관점에서의 핵심 개념 및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내용구성, 교수학습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진로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자칫 법조인 양성을 위한 대학 법학교육으로 회귀되거나 수학능력시험이 재편될 경우 선택과목으로서의 위상 약화로 인한 학교법교육의 약화 등의 측면에서는 우려를 갖게 한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성취기준 '연구 초안'의 특징[3)]

<법과 사회> 과목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연구 초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첫째, 초·중학교 사회 교과와 고등학교 <통합사회> 법 영역과의 연계 및 위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둘째, 교육 현장의 학습량 적정화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정치와 법>이 6개 영역 18개 성취기준으로 구성하였던 것에서 총 4개 영역 13개 성취기준으로 조정하였다. 셋째,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비하여 일반 선택과목이 아닌 진로선택과목으로서 구성하였다.

교육과정 내용 선정 및 조직을 위해 고려한 관점은 법교육 관점에서 핵심 아이디어와 핵심 개념의 재선정, 학습자의 법적 경험 확장을 고려한 내용 배열, 나선형 교육과정의 존중과 이에 따른 조정, 법학 최신 동향과 현대적 법률관계의 반영, 사회과의 목표와 법학의 최신 동향을 고려한 입법교육의 도입, 진로 선택과목으로서의 법과 사회 과목의 역할이다.

첫째, 법교육 관점에서 핵심 아이디어와 핵심 개념을 재선정하여 이에 대한 내용 요소 학습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 능동적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법 관련 분야 진로 탐색, 법적 문제 해결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핵심 아이디어는 국가-사회 구별론을 전제로 사회는 사적 자치 원리에, 국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반하여 각 원리에 적용되어야 할 관념적 영역과 핵심 내용, 복지국가 원리, 사회법의 등장 및 사적 자치 원리의 수정, 권리-의무로 구성된 법률관계, 온라인 공간에서의 새

3) 정필운·양지훈(2022)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 과목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 -진로 선택 과목 "법과 사회"를 중심으로- 발표문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로운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 및 대응 등이다. 핵심개념은 사적 자치,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지국가, 권력분립, 죄형법정주의, 권리, 권한, 의무, 책임, 계약, 불법행위, 기본권, 범죄, 형벌 등이다.

둘째, 대단원은 개인 생활과 법, 국가 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학교생활과 법 총 4개 단원으로 구성되는데, 단원의 배열은 학습자의 법적 경험의 확장과 법학의 지식의 구조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개인(가정: 민법이 규율하는 사회) → 국가 → 사회법이 규율하는 사회 → 학교 순서로 구성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정치와 법〉 과목 구성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대단원 구성에서 고등학생의 주요 삶의 맥락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원인 '학교생활과 법' 단원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학교생활과 법'에서는 학생과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학교와 일상생활 사례에 적용하기, 학교폭력 사례를 통해 학교생활에서의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 탐색하기, 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를 찾아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보기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셋째, 교육과정 구성 측면에서 나선형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인권보장, 국회와 행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법의 의미와 목적, 재판의 종류 등의 내용이 배제되었으며, 법치주의, 복지국가 원리, 권리와 의무 등의 내용은 확대 및 심화되었다. 법학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과 지적 재산권 학습 요소를 추가하고, 입법교육을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진로 선택과목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각 영역의 성취기준 적용시 해당 영역과 관련된 진로 직업(군)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분석

1) 선택과목 체계의 문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은 과학계열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에 대응하여 일반사회, 윤리, 지리, 세계사 체계로 균형을 맞춘 의도로 생각된다. 선택과목이 반드시 수능과목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교육의 운영상 편의성, 학생들의 예견가능성을 고려하면 선택과목 중심으로 수능과목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선택과목은 공통과목인 〈통합사회〉와의 연계성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과 학문의 대표과목이 되어야 하며, 다른 직업선택과목이나 융합선택과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으로 재편된 선택과목 운영체제에서 고교학점제의 확대 시행 이후 각 선택과목 영역이 실질적으로 어떠

한 위상을 가지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중 일반선택과목은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과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수능 선택과목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다(이정우·은지용·서범석·송미리, 2022: 192). 현재 일반선택과목으로 구성된 <사회와 문화>는 사회 현상의 이해와 탐구, 사회 구조와 사회 변동, 일상 문화와 문화 변동, 사회 불평등과 사회 복지라는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 체제로는 사회과의 대표과목으로서 기능하기 어렵고, <통합사회>와의 연계성도 부분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같은 이유로 <사회와 문화>는 <법과 사회>, <정치>, <경제> 등과 연계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예상된다. ‘사회 불평등과 사회 복지’ 정도만 정치 또는 법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정치와 법>뿐만 아니라 <경제> 역시 학생들의 수능시험 선택자 수는 다른 교과에 비해 월등히 적었다.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의 분과학문 체계가 더욱 강조되다 보니 혹시라도 학생들로부터 더 외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현 체계는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융합선택 사이의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정치>, <경제>, <법과 사회>를 모두 진로선택으로 편제한 것은 이들 과목에 대한 사회과 내에서의 시각이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선 지리는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이 총 4개 교과이다. 세계사 역시 3개 교과에 불과하다. 윤리는 4개 교과이다. 이에 반해 일반사회는 6개 교과나 된다. 6개 교과를 얻어낸 것이 분과학문의 특성을 살릴 덕이 될지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선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독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뿐만 아니라 윤리, 지리, 세계사는 일반선택과목이 일반대표 교과로 성격을 갖고 진로선택과 융합선택이 선택과목의 세부과목으로서 발전시킬 여지가 높다. 지리과 일반선택 과목은 <세계시민과 지리>로 사회과 지리 영역의 일반대표 교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공통과목인 <통합사회>와의 연계성도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계시민과 지리>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지리과 진로선택과목으로 구성된 <한국지리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나 융합선택과목인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와 같은 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일반선택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같은 계열의 분과 가운데 진로선택이나 융합선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학습의 부담이 덜할 수 있고 수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사회와 문화>를 선택한 학생들이 “<사회와 문화>를 선택한 것을 계기로 하여” 과연 <법과 사회>, <정치>, <경제>를 선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반사회 영역의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간의 연계성이 낮기 때문이다.

2) 진로선택과목으로서 법교육

지금까지의 법교육이 생활법교육을 지향했음에도 진로선택과목으로 구성되면 오히려 법학교육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진로선택과목은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진로선택과목의 특징과 운영이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정치〉, 〈경제〉, 〈법과 사회〉를 진로선택과목으로 두고 진로탐색의 성격을 강조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대학교육 또는 직업교육과 연계되게 된다. 물론 〈법과 사회〉를 통해 탐색할 수 있는 직업군이 반드시 법조인에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영역에 따라 관련 직업군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탐색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직업윤리에 해당하는 정도이고 법교육의 본래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진로탐색 또는 직업탐색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법과 사회〉를 진로선택과목으로 운영할 때 예상되는 이와 같은 혼란은 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 구성에 있어 현행 사회과의 분과 교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다보니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진로선택과목의 성격과 그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교과목 편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도 보여진다. 현재의 체제에서 〈법과 사회〉는 심화과목으로서도 그리고 진로 관련 과목으로서도 제 기능을 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 체제로의 전환 이후 많은 대학의 학부에서는 정작 법과대학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렇기에 사회과 법영역의 진로선택과목으로의 구성은 학습자 입장에서 입시에서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요소가 많지 않은 편이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이 관련 학과로의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진로와의 연계 측면에서의 법영역에 대한 관심은 낮을 수 있다.

3) 〈법과 사회〉 성취기준에 대한 아쉬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관점이 고려되어 추진되었다(은지용, 2022). ⅰ)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이 교과 차원에서 발현되어, 지식을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가.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아우르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 가능한가. ⅱ) 학습자 주도성(learner agency)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진로 및 적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운영 가능한가. ⅲ) 사회적 변화 및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ⅳ) 교육 환경 변화(펜데믹, 기술 발달, 고교학점제 등)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성취기준은 시안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아쉬운 점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신설된 4단원

‘학교생활과 법’은 지식을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학습자 삶의 주요 맥락을 고려하여 학생과 청소년의 법적 지위, 학교폭력 문제가 내용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이 외에도 체벌, 두발과 복장, 휴대폰 사용, 생활지도 등의 다양한 사례를 토의·토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원별 성취기준에서도 주요 학습 내용을 일상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지식을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범교과교육으로의 법교육에 활용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초역량 교육을 지향하고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포용과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기초역량 함양을 위한 법교육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 구현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4단원에서는 일상생활 사례의 적용, 법적 문제 발견 및 해결방안 탐색, 사회 참여 태도 형성과 같은 과정 및 기능, 가치 및 태도 측면이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들과의 협력적인 학습 경험에 대한 측면도 고려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진로선택과목임에도 진로교육과 연계하기 위한 구성으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법적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직업적 역량과 소양에 대해 탐색하기에는 다소 한정적인 구성이다. 물론 각 영역의 성취기준 적용시 해당 영역과 관련된 진로 직업(군)을 소개하고자 하였고, 입법교육의 관점을 도입했기에 입법가의 관점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진로선택과목이라고 해서 진로에 대한 망라적인 소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련 직업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 법조인에 한정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의 구성 체제에서는 교과별 학문영역 내의 주요 학습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선택과목인 일반선택과목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나 진로선택과목으로서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과별 심화 학습과 진로의 탐색이라는 두 목표를 애매하게 절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셋째, 사회적 변화 대응 측면에서 보면,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법교육은 법적 지식 이해 측면만이 아닌 과정 및 기능, 가치 및 태도 함양 측면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법학의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3단원 사회생활과 법 영역에서는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과 지적재산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고 토론한다”라는 성취기준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매개로 한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을 살펴보고, 현대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플랫폼 노동의 보호,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그 한계와 같은 법률문제를 찾아보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학습자

가 주도적으로 찾아보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미래사회의 법적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사회적 변화와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도를 고양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고무적이다. 최근 학생들에게 요청되는 디지털 리터러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단원이다. 다만, 사회생활과 법 영역의 전통적 이론에다가 최신의 경향까지 반영하다보니,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은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성이 있다.

넷째, 평가 측면에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취평가제의 타당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성취기준의 마련과 그 기준에 따른 교사의 평가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수업 내용과 평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과 그에 적합한 과제의 개발이 필요하다(김신영, 2012). 〈법과 사회〉에서 성취평가제가 효율적으로 안착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가방식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성취기준의 마련과 성취수준의 진술, 평가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성취평가제에서는 성취기준에 따라 성취수준을 명료하게 진술하여야 하는데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성취기준 구성시 평가 방법 측면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루브릭 제시 등과 같이 학생들이 학습 참여 과정 중 제시된 평가 항목과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성취 정도를 스스로 혹은 동료 학생들과 협력적으로 성찰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겠다.

4) 〈법과 사회〉 부활로 인한 학생들의 선택 감소 예상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문이과 통합이나 고교학점제 등을 이유로 기존의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능과의 연관성을 애써 무시한 측면이 강하다. 수능이 어떻게 되든 〈법과 사회〉 선택자 수가 법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현실은 외면하기 어렵다. 실제로 법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준법의식이나 법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과교육으로서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치와 법〉 과목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인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인식은 과거 〈법과 사회〉, 〈법과 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어 직접적인 조사가 어렵지만, 교사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유추해 보면, 〈법과 사회〉는 법생활의 여러 분야를 생활법 형식으로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법과 정치〉로 바뀐 후부터는 어려운 내용이 다소 제외되고 교과서도 다양해지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과목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도 법은 어렵고 정치는 관심이 없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치와 법〉 교과로 과목명을 변경하고 내용을 줄이면서 법에 대한 두려움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학교 현장의 평가도 존재한다. 〈법과 정치〉 그리고 〈정치와

법>으로 전환된 이후 과목에 대한 장벽이 다소 낮아진 부분에서는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법영역의 학습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한다. 첫째, 어려운 한자어이다. '조각', '수반', '소원' 등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 무효, 취소, 철회, 해제, 해지의 차이, 체포, 구속, 구금 등의 차이. 상소,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의 차이, 판결, 결정, 명령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한다. 셋째, 지나친 요건과 절차의 강조도 어려워한다고 한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부당한 침해와 현재의 위난 등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넷째, 학생으로서 법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다. 다섯째, 수능 시험에서 어렵게 지엽적인 문항이 출제된다. 예를 들어, 과거 임대차, 상속이나 유류분에 대해 학생들은 흥미를 느꼈지만 정작 시험에서는 어려웠고, 현재 교육과정에서도 체포와 구속 역시 정밀한 이해를 요구받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교사들의 수업 자료는 과거 교과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현행 교과서보다 더 어렵게 가르치는 경우들도 종종 발견하게 된다.

<법과 정치>는 수능 과목으로 선택할 경우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인지 선택자가 많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수능 과목으로서 주는 위상은 무시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 한번 도전할 만한 과목이라는 인식도 있고, 다른 과목에 비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과목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과 정치>에서 <정치와 법>으로 변경되면서 실생활 중심의 내용이라고 여겨지고 학생들이 가장 흥미있어하는 부동산 임대차와 상속 부분이 빠진 것은 아쉽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학계에서는 <법과 사회>의 단독 과목의 부활을 주장하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수능 과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법교육과 정치교육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도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처럼 <법과 사회>의 고유성 때문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획일적인 과목 간 형평 또는 문이과 통일성 때문에 교과에 대한 성격이나 위상을 왜곡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기회에 <법과 사회>로 독립 부활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주저되는 부분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습 분량, 학습 방식, 수업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 현재 <법과 사회>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개념들에서 탈피하더라도 또 다른 어려운 개념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Ⅳ. 〈법과 사회〉 교과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법교육의 정체성 회복 노력

1) 법학교육에서 법교육으로

법교육은 법의 이해와 적용 또는 법교육을 통한 사회의 이해, 합리적 사고와 의사결정, 긍정적 참여, 자율과 조화 등의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4] 법교육학계에서는 법교육과 법학교육이 다름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법교육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 또는 실천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교육과정을 구현하는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법교육에 대한 철학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 교육 구조상 수능 시험이라는 평가 체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과 사회〉가 정치와 분리되어 단일과목으로 전환될 경우 법교육 정체성 회복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법학교육이 아닌 법교육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겠지만, 필자들이 생각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학 교육 방식에서 채용된 개념 법학, 요건과 효과 형식의 학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이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개념에서 출발하여 사례해결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의 관찰을 통한 문제의 지점인 법적 쟁점의 포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태도가 중시되어야 한다. 법교육이 사회화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의 일부라는 점에서 방법론이 좀더 사회과학적이고 통합과학적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법률의 적용이 아닌 법의 적용을 통해 합리적 사고 및 의사결정 능력을 고양하여야 한다. 법률의 적용 대신에 법의 적용이어야 한다는 점은 다양한 가치에 대한 열린 태도를 의미한다. 형식적 적용이 아니라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적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같은 맥락에서 법적 문제 또는 분쟁의 다양한 해결 방식과 결론을 보장해야 한다. 자유로운 의사와 관용적 태도에 의한 해결이 가능함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같은 취지에

4) 「법교육지원법」에서는 법교육을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 법률 개념의 기계적 적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2) 사회과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 일반사회과 교과 재구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는 공통과목으로 통합사회, 일반선택으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진로선택으로 고전과 윤리,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를 두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편되면서 일반선택이 윤리, 지리, 역사, 일반사회 각 영역에서 1개 과목으로 축소된 것이다. 그런데 윤리, 지리, 역사의 경우 일반선택 과목이 각 분과의 특성이 반영되어 대표적 또는 포괄적 과목으로 자리잡았지만, 일반사회의 경우 예를 들어 <시민과 사회>나 <공민>이라는 과목으로 통합되지 않고, <사회와 문화>가 일반선택으로 일반사회과의 대표과목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편제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예상된다. 우선 통합사회 - 일반선택 - 진로선택 - 융합선택 사이에 각 위계의 특성이 특히 일반사회의 경우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합사회 과목의 등장 때부터 지적된 것처럼 통합사회는 융합과목의 성격을 갖는다. 학교에서 수능 시험에 대비할 경우 일반선택을 고3 과정에서 학습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자칫 융합과목의 성격인 통합사회를 1학년에서 학습하고, 2학년에서 진로선택이나 융합선택을 학습한 후 3학년에서 일반선택을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계열성이 원래 의도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다음으로 지리나 역사, 윤리 계열의 경우 일반선택이 상위개념이고 여기에 포함된 세부개념 또는 심화개념으로서 진로선택이나 융합선택이 포함된다. 따라서 진로선택이나 융합선택과목의 학습이 일반선택 과목 학습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반사회의 경우 분과 학문 체계의 특성이 지나치게 반영된 결과 상호 연계성이 약하다. 따라서 일반사회과 진로선택이나 융합선택의 학습이 일반선택인 <사회와 문화> 학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비록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수능 선택과목에서 쉬운 과목을 선택하려는 의도로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기는 하지만, <사회와 문화>만으로 이러한 경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따라서 일반사회과에서 개별 교과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체계를 재구성해야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 <사회와 문화>만의 생존을 위한 이러한 경향은 <사회와 문화>의 지속가능성이나 일반사회과에서 <사회와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보하기 어렵다. <사회와 문화>의 체제 개편 또는 (가칭)<공민>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통해 <통합사회>를 연계하고 함께 경제, 정치, 법의 동시 개편을 유도해 낼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법과 사회>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사회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과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법학교육이 아닌 법교육의 정체성 회복이 첫걸음이 될 것이다. 〈법과 사회〉 과목명 자체도 학생들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가칭)〈시민과 법생활〉, (가칭)〈시민생활과 법〉과 같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명으로 개칭할 필요가 있다. 내용 면에서도 국가생활과 법은 〈통합사회〉 또는 〈정치〉, 개인생활과 법은 〈경제〉, 가족생활과 법은 〈사회와 문화〉 등과 연계의 가능성이 있다. 시민생활이라는 명칭에서부터 사회과학적 현상에 대한 탐구 중심의 법교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3) 생활법 교육으로서 법교육 지향

법교육은 헌법교육과 생활법교육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우리나라 법교육의 발전 과정에서 전자가 먼저 강조된 측면이 있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정치교육, 시민교육, 역사교육 등 다양한 명목과 명칭으로 헌법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정치와 법〉으로 통합된 것도 법교육에서 갖는 헌법교육의 위상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과 사회〉의 등장과 함께 법교육의 독립은 생활법교육의 강조라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다. 실제로 법교육 발전 과정에서 〈법과 사회〉의 독립, 〈법과 정치〉로의 통합과 교과서 복수 체제, 〈정치와 법〉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생활법 교육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긍정적 평가가 증가되어 왔다. 다시 〈법과 사회〉로 복귀하여 '부활'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생활법교육 경향은 유지되어야 한다. 생활법교육을 지향한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시민교육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단원도 생활법에 입각해야 한다. 헌법은 생활규범적 성격이 강한 특성이 있다.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특성이 있으면서도 헌법질서가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생활법교육은 개념의 습득과 적용보다는 생활의 관찰에서 시작해야 한다.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에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개념에서 사례로 나아가는 것보다 사례에서 문제해결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적 도구 개념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학습이 가능하다. 셋째,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과 법, 소비자 보호와 법, 권리구제 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교육 요소들은 오히려 축소되어 왔다. 난이도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법과 정치 교과서가 개념만 남게 되었다는 아쉬움도 있다. 법학교육이 아니라 생활 속의 법교육으로 기조를 바꾸고, 사회과학적 방법과 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집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적용과 평가를 위한 사례가 아닌 교육을 위한 사례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법과 사회>로 독립 부활한다면 헌법교육과 생활법교육의 어느 정도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헌법교육으로서 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남는다. 당장 <법과 사회>와 <정치>가 어떻게 해서든 헌법을 분할함으로써 중복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서 헌법교육은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던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 혐오라든가 정치학적 관점에서 헌법을 경시하는 풍조도 없지 않았다. 정치학의 특성이라기보다 우리나라 헌정사의 영향일 수도 있다. 최근 법교육이 강조됨으로써 헌법교육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활성화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시민사회에서도 헌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사회과 교과에서 분과학문 체계가 강조되다보니 <정치>와 <법과 사회>로 분리되는 상황에서는 자칫 <법과 사회>에서 헌법교육의 위축이 염려되기도 한다. 헌법교육은 법교육의 일부이자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 연구자와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법과 사회>의 생활법 성격의 강조가 헌법교육의 포기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2. <법과 사회> 과목 운영상의 노력

1) 진로선택과목으로서 특성 고려

<법과 사회>가 진로선택과목이 되면 학생 선택이 늘어날 수 있으나, 그만큼 더 주변과목으로 취급되어 과목의 중요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불가피하게 진로선택과목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도 있다. 사실 과거에 법학 또는 법정 계열과 경상계열은 문과 또는 인문사회계열의 대표성을 갖는 진로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 법학계열 또는 법정계열에 대한 관심은 대학 졸업 이후로 미루어졌다. 정치학이나 행정학, 경찰행정학 등에 대한 관심은 유지되고 있겠으나, 이 영역은 사실 넓은 의미로 정치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이전에는 학생들이 이른바 명문대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사법시험을 치루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희망과 동기부여가 있었다. 지금도 물론 법전원에 가려고 할 때 유리한 학과를 탐색하는 태도로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대개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이후 학부과정으로서 법대 진학에 대한 열정은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된다. 고등학생들은 교과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입시와 진로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크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창체 활동이나 진로탐색에서 법학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가 부활하지만 일반선택과목이 아닌 진로선택과목이 된다. 최근 고등학교에서 등급 산출에 부담이 적은 진로선택과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생 활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법과 사회〉 과목 운영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다양한 수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관찰된다. 수능 준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에 활동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구성하여 생활기록부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될 내용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정치와 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3학년보다는 2학년에서 수업하는 경우에 교사가 계획한대로 수업을 진행하기에 유리하고,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과 사회〉를 일반선택과목이 아닌 진로선택과목으로 수업할 경우 교사들도 수능과목 또는 일반선택과목을 수업하는 교사보다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진로선택과목에서는 수행평가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수행평가를 통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어줄 개인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평가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어, 학생 지필평가 점수가 낮아 C가 많이 나올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현 체제로 유지된다면, 자율/진로/동아리 특기사항과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강조되기 때문에, 〈법과 사회〉 과목이 이러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는 있다. 따라서 진로선택과목으로서 〈법과 사회〉 교과를 위한 교육 콘텐츠도 새롭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진로선택이라 하더라도 학부에 법학과가 남아 있는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공적합도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다른 사회과 영역의 진로선택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법과 사회〉가 진로선택과목이라고 해서 교과 내용에 다양한 진로를 소개하면서 각각의 직업에서 법이 필요하다는 방식의 수업이 바람직할지는 다소 의문이다. 각 직업마다 직업적 규범이나 규범화된 직업윤리가 있겠으나 그러한 내용을 법교육의 내용으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노동법 단원을 진로교육으로 생각할 우려도 없지 않다.

한편 진로선택과목은 3학년보다는 2학년에서 수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3학년에서 교육되는 진로선택과목은 특기사항 작성을 위한 활동만을 실시한 후 자습만 실시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법과 사회〉가 진로선택과목이 된다는 것만으로 위상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능 선택과목에서 제외된다면 교과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과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수능 선택과목에서 제외될 경우 학생들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다면 단위 학교 교육과정에서 교과로 편제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진로선택과목의 특성상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질 수도 있다. 즉 학습은 하지만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고교학점제 등 교과 운영상의 어려움 대비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예를 들어 <사회와 문화>와 <법과 사회>가 각 학교의 교육과정상 어느 학년에 개설되느냐도 중요하다. 학생들은 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과목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으로 전공 선택을 위해 생활기록부에 신경을 쓰는 과목을 차순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법과 사회>의 경우 수능과도 그리고 진로와도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3학년보다는 2학년에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학년에 개설이 된다면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현장 교사의 입장에서도 진도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1학년 통합사회 - 2학년 진로선택 - 3학년 일반선택이라는 비논리적인 체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게 될 위험성도 크다.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운영될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학년과 관계없이 선택하게 하더라도 3학년 학생들이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 구분 없이 2학년 중 선택한 학생들만 수업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자연계 학생들이 진로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법과 사회>에 대해 선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성취기준 개선이나 교과서 편찬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과 관련된 헌법 문제나 민사 불법행위에 관한 사례형 학습도 권장될 만하다.

고교학점제 하에서 <법과 사회>가 집중이수제로 운영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치와 법> 과목을 집중이수제로 경험한 교사나 학생들은 수업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 하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이유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면, 이과생들을 포함하더라도 <법과 사회>에 대한 선택자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과 사회> 과목의 분반이 많지 않을 것이고,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하에서 수업부담을 이유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수업을 담당하고 그 외 교과는 기간제 교사나 강사에게 맡길 가능성이 현재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은 <법과 사회>를 담당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교육 역량도 축소될 위험성이 제기된다. 교사들의 <법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교육청에서 <법과 사회> 담당 교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

1) 지속적인 교사 연수

교사들이 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범 사회과 교사들에게 법교육에 대한 인식은 다른 교과에 비해 미약할 수밖에 없다. 일반사회

영역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의 논의로 들어가면 교사들은 <정치와 법>과 <경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사회교육 전공자가 아닌 교사들은 법 과목 자체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한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학교에서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거나 자신 없는 과목들을 굳이 선택의 영역에 두기보다는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법과 정치를 매년 수업하는 교사는 실제로 많지 않다.

과거보다 법교육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증가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세대에 따라 예비교사 시절부터 법교육에 대한 기회를 많이 부여받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다. 일반사회과 내에서 법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시작된 시기도 <법과 사회> 교과가 등장한 기반 조성기부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불과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교사연수가 줄어든 상황도 있겠지만, 어느 직역이든지 보수교육에 대한 피로감은 있을 수밖에 없다. 법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법교육 연수 참여는 기대하기 어렵기도 하다. 법교육의 기반이 조성되던 시기 법교육 연수가 활발했던 기억에 비추어보면, 최근들어 법교육 관련 교사 연수의 기회가 줄어든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다.

그런데 법교육은 교육과정 개편과 법령의 개정, 새로운 판례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친양자 제도, 친권에서 징계권 삭제[5],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선거구 제도 등은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개정 논의 중에 있다. 교사들은 법령 개정에 따른 수업 내용 변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법교육에 있어 기본적 개념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편이지만, 시의성 있는 사례들과 학생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사회, 4차산업혁명, 저출생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도 법교육의 내용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 법교육 콘텐츠의 제작 및 제공

교사들이 법교육 과정에서 간혹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시험에서 어려운 사례를 출제했을 경우이다. 시험이 아니더라도 수업 시간에 질문이 있거나 시사적인 사례 또는 뉴스의 판례를 활용할 때 법적 판단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다. 우리 교과서의 서술 방식이 또는 학생들의 태도가 교사들을 변호사로 인식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사실 학생들의 질문 자체가 부정확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질문들은 교사들이 법교육을 더욱 어렵

5)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게 인식하게 만든다. 적당한 판례 자체를 찾는 것이 교사들에게는 쉽지 않으며, 검색한 판례를 수업을 위한 사례로 윤색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률 사례들을 학생들의 수준과 교과서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단순화하는 과정도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그나마 헌법 단원은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간추리기 쉬울 수 있고 범죄와 형벌 단원에서는 정형화된 사례 이상을 수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인생활과 법 단원은 검색한 사건들이 상당히 복잡한 경우들이 많고, 노동법 단원 역시 교육과정 범위 내의 적당한 사례를 찾는다면 너무 단순하거나 흥미를 유발할만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 복잡한 사례들은 교사들이 스스로 사례들을 다듬기는 쉽지 않다. 복잡한 사례를 교사들이 수업 내에서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법교육이 활발해지면서 법무부와 학회 또는 대학에서 법교육 수업 자료를 제작하고 법교육센터 등에서 제작한 콘텐츠들을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여전히 법교육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시의성 때문에 최근의 뉴스를 기대하거나, 판례를 사례화하기를 바랄 수도 있으나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 목적이 학습자료용은 아닐 수도 있어 교사가 바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궁극적으로는 교사들 스스로 또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같이 법교육 전문가들과 교사들의 협업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법과 사회>가 진로선택과목으로 편입되게 되면 진로선택 특성에 맞도록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콘텐츠가 개발, 보급되어야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법교육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개념 학습 중심이 아닌 체험,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학생들의 참여를 유발할 수 있고 이른바 세특 작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급적 이러한 콘텐츠 개발은 교과서 집필 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3) 법교육 전문 교원의 양성

만약 법교육에 대한 수요가 축소되어 학교에서 법교육을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교사들은 법교육 과목을 담당하는 것을 더욱 어려워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교육청 별로 법교육 전문교사를 육성하여, 학교에 파견하는 형식이 가능할 수 있을지 검토할만 하다. 이것은 법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도 소수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본격적인 고교학점제 실시 이전이어서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4. 범교과 학습과 생활지도 등을 통한 법교육

1) 범교과 학습과 생활지도

범교과 학습이나 생활지도를 통해 법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불가능하거나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범교과 학습이나 학생 생활지도는 윤리적 지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강이나 동영상 시청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사가 법교육을 위한 내용구성을 하기 어렵다. 교사들의 법교육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나 시민교육, 생활지도 과정에서 법교육으로 귀결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과 사회〉에서 학교생활과 법 단원이 편제된다면 법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활지도에 있어 관련 교사들이 사회과 담당일 경우 법교육적 지식을 활용한 지도에 편리함은 있을 수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법교육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 의무 교육 시간에 법 관련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추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 창의체험활동의 활용

법교육은 창의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특히 동아리활동을 통한 지도나 학습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교사들에게 알려져 있다. 동아리활동은 법원견학을 포함한 각종 견학이나 시사문제 탐구, 근로권에 관한 활동, 모의재판, 학교밖 법교육 프로그램들의 이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창의체험활동 역시 학생들의 관심과 교사들의 지원에 기대는 바가 크다. 앞으로 입시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 입시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법교육의 위상 하락은 법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동아리활동을 통한 법교육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과 외의 법교육 콘텐츠의 보급과 시민사회의 법교육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Ⅴ. 결론

아직도 법교육이라고 하면 법률 조항을 따져보거나,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처럼 경직된 과목이나 영역으로 이해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많다. 법교육의 활성화는 이러한 시각을 교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영역의 선택과목인 〈법과 사회〉 과목에서는 법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사고능력, 법적 문제를 선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사법과 입법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력,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협력적 소통 등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그 목표의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처럼 학교법교육은 법학개념 이해가 중심이 아닌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법과 사회>는 사회과 다른 과목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야 하며, 법교육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법과 사회> 과목이 채택되면서 독자성을 갖기 시작하여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법교육 차원에서 헌법교육이 강조되면서 헌법교육이 활성화되었고, <법과 사회> 과목 신설 이후 생활법 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와 「법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법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법교육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학 개념 및 지식 위주의 법교육, 교사의 법교육 역량 강화 요구,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의 문제 및 사법부의 신뢰 저하로 인한 법교육의 장애사유, 기술 발전 및 펜데믹 등의 사회변화로 인한 법교육의 변화 요구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법교육은 <법과 사회> 과목의 분리 독립과 진로선택과목으로의 재편으로 인해 큰 전환점에 놓여 있다. <법과 사회> 과목의 학교에서의 위상은 앞으로의 학교법교육의 전개 양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법과 사회> 교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교육의 정체성 회복 노력이 요구된다. 법학교육이 아닌 법교육, 사회과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 생활법 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 실천되어야 한다. <법과 사회> 과목 운영에 있어서도 진로선택과목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비가 필요하며,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법교육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범교과 학습과 생활지도 등과 연계한 법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곽한영(2006). 한국 법교육의 현황과 전망. 법교육연구, 1(1), 1-18.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교육부 보도자료. (2021. 11. 24.)

교육부(2022). 고등학교 교육과정(시안) 행정예고본.

김 각(1995). 교사양성 대학에서의 법관련 교육과정: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법연구, 1, 149-162.

김신영(2012). 교사의 학생평가와 성취평가제. 교육평가연구, 25(4), 655-677.

박성혁(2006). 법교육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발전 방향. 법교육연구, 1(1), 53-71.

법무부(2020). 사회변화에 대응한 법교육 혁신방안 연구.

은지용(2022).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자료집, 111-146.

이정우·은지용·서범석·송미리(2022). 2022 개정 '사회와 문화' 교육과정 개발 경과.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자료집, 191-202.

전석재(1999). 고등학교 법교육 교재의 교육과정 적합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순원(2011). 법교육지원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회과교육, 50(4), 83-97.

정필운·양지훈(2022).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선택 과목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 -진로 선택 과목 "법과 사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자료집, 215-226.

최인화(1992). 법교육과정의 적정성 탐색: 중·고교생의 법의식 분석을 토대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디지털 전환과 법교육의 미래
- 법사회학적 접근 방식의 시사점 -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목 차

Ⅰ. 서론
Ⅱ. 디지털 전환의 담론 배경과 맥락
1. 디지털 전환의 의미와 동향
2. 디지털 전환과 미래 예측
3. 디지털 전환과 사회변화
Ⅲ. 디지털 전환과 법규범 변화의 특징
1. 디지털 전환과 불확정성
2. 사회변화와 법현실의 중요성
Ⅳ. 미래 법교육에 대한 법사회학적 접근
1. 현재 법교육의 인식론적 토대와 그 한계
2. 법교육의 법사회학적 인식 확대 필요성
3. 디지털 전환 맥락에서의 미래 법교육
Ⅴ. 결론에 대신하여

Ⅰ. 서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현재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그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꾸준히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19라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중심적인 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디지털 전환은 사회 전 영역이 디지털 수단을 매개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사회 구조는 물론이고 규범적 지형 변화를 추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시적 사회 구조의 변화는 당연히 법규범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촉발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종래 전통적인 규범 질서에 대한 재편 논의도 바르게 진행될 것으로 여겨진다. 바로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인공지능 등

*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입법학센터장, 법학박사).

신기술(emerging technologies)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윤리기준 정립 시도라고 할 수 있다.[1] 물론 이러한 논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규범 전환의 매우 초보적인 시발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생각해볼 중요한 논제 중 하나는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을 어떠한 내용과 체계로 진행할 수 있을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정립된 법규범의 체계와 내용 전수를 중심으로 하는 법교육이 미래사회에서도 과연 유지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를 현 시점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법교육에 있어 전통적인 법체계와 내용을 단순히 도외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전수 및 교육해야할 내용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교육적 관행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는 반드시 다루어져야할 논제이다.

종래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법교육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구조와 규범적 지형의 변화는 분명 법교육 변화 필요성에 관한 논의를 더욱 더 추동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법교육 변화의 필요성은 바로 법현실과 법규범 간의 괴리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법학 연구에 있어 '법현실'과 '법규범' 간의 괴리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법사회학이었다. 법사회학은 대체적으로 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의미한다. 즉 법이라는 것을 지 규범적인 체계 속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해 다분히 경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즉 법사회학 연구는 전통적인 해석법학적 태도와는 달리 법과 사회의 상호 작용에 주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법사회학적인 접근방법이 현 상황에서의 법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선 이 논문은 디지털 전환 담론의 맥락은 무엇이고(Ⅱ), 이는 궁극적으로 법규범적 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Ⅲ). 이에 기반하여, 현재의 법교육이 가지는 인식론적 한계 지점을 고찰해보고, 법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사회학적 접근방법이 가지는 시사점을 고찰해본다(Ⅳ).

---

1)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European Commission*, 2019.4.8.; 관계부처 합동,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AI) 윤리기준」, 2020.12.23.

Ⅱ. 디지털 전환의 담론 배경과 맥락

1. 디지털 전환의 의미와 동향

현재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이 논의되는 핵심적인 요인은, 정보통신기술이 단순히 인간의 소통만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공간의 다양한 정보들을 데이터화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단순한 정보 및 데이터의 소통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 분석 및 활용 가능성이 현격히 높아졌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세상의 모든 사물(things)들이 연결되고, 또한 디지털화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에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CPS)이라는 용어로도 지칭된다. 즉 CPS는 네트워크상의 가상 세계와 물리 세계가 연동된다는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디지털 전환은 매우 효율적으로 세상의 다양한 외부적 사물과 상황,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환은 과거 인간의 노동을 중심으로 한 생산양식을 기계적 수단으로 대체되는 새로운 양식으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대감에 입각하여, 실제 언론 등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현재의 동향 등을 가늠해 보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를 활용하여 관련 뉴스들을 분석해 보았다. 통상 언론 보도들이 쟁점화된 사안들을 다룬다는 견지에서, 이를 기반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가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2016 년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6년 3월에는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국이 개최되어, 전국적으로 디지털 기술과 이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에 관해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뉴스 등 언론 보도 검색의 시기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7월 30일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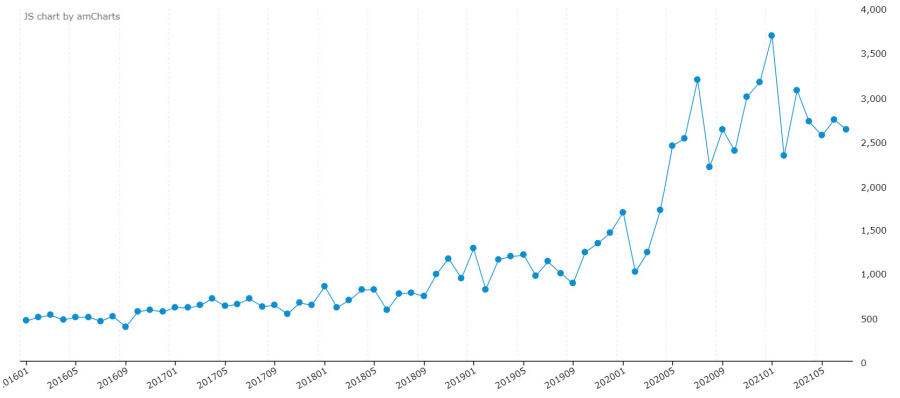

[그림 1] '디지털 전환' 키워드 트렌드

위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2020년을 전후한 시기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전에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 중반을 기점으로 현격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용어를 유럽 등 서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점과 더불어,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 도구들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관한 논의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디지털 전환과 미래 예측

최근 들어 디지털 전환 담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다소 본원적으로 보자면 그다지 새로운 관념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80~90년대 이미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했던 정보사회 또는 후기산업사회 담론은 사실상 현재의 디지털 전환 논의 맥락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당시와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전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과거의 정보사회 관련 논의가 미래의 변화를 상정하여 논의되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논의는 현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에 터 잡아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이행되고 있는 것은 그간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기반하고 있다. 1990년대를 전후 한 시기 단대단(end-to-end) 원칙에 근거한 인터넷의 도입은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적 소통의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2000년대 후반 모바일 인터넷의 도입은 비약적인 데이터 소통 및 축적의 증가 현상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개괄적인 기술 발전에 터 잡아, 이후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블록체인(Block Chain), 메타버스(Metaverse) 등 소위 신기술들(emerging technologies)의 출현은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이러한 신기술들이 완성된 기술 요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 과정에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통신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관심은 초기 상황에서 매우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정책적 대응 논의도 과도하게 먼 미래를 예견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개념이다. 이는 사람 및 사물 등 현실공간의 모든 것들을 가상세계와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비전하에 u-Korea 정책을 추진한 바도 있었다.[2] 물론 이러한 정책은 당시의 기술 수준에 입각한 예측에 터 잡은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유비쿼터스 정책적 지향점과 현재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지향점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사실상 15년여가 지난 지금도 유사한 정책적 논제와 방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3]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이, 신기술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통상적으로 신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데 있어 자주 원용되는 것은 바로 가트너(Gartner)사가 매년 업데이트 하여 제공하는 신기술 관심주기곡선(Hype Cycle)이다. 이에 따르면 통상 신기술들에 대해서는 개발 및 도입 초기에는 과도한 기대가 집중되다가 그것이 퇴조하고, 이후 완만한 생산 및 발전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기술 기대와 생산 예측이 모든 신기술 발전 맥락에 관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기술 도입과 발전에 관한 예측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예시라고 판단된다.

2) 정보통신부, 세계 최초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u-Korea 기본계획, 2006.
3)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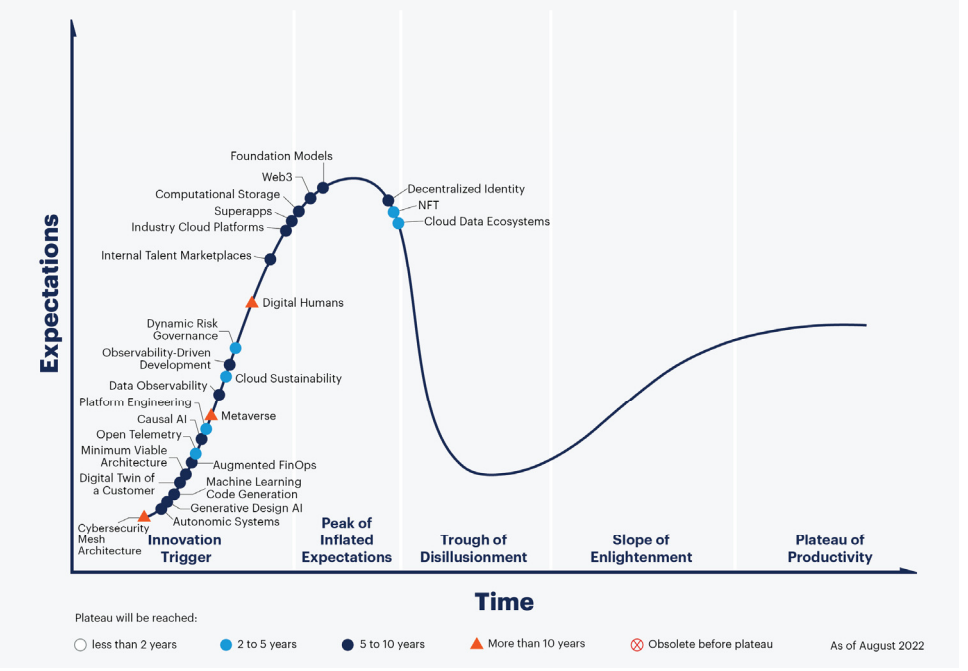

[그림 2] 카트너사의 신기술 하이프곡선

결과적으로 신기술의 발전 및 보편화에 관한 예측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법이나 정책에 관한 논의는 매우 유동적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정책이나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회 사실상태가 어느 정도는 확정될 수 있을 때, 그에 대한 대응방안 구성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디지털 전환 및 그 기반으로서의 신기술이 전제된 상황에서는 지향해야할 (법)규범 상태를 상정하는 데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3. 디지털 전환과 사회변화

위와 같은 미래 예측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공동체적 차원의 사전적 대응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예측할 수 없다고 대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의 맥락을 면밀히 추적·관찰해 가면서 가급적 현실 변화 상황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4)]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변동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종래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 소통을 기반

4)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영향평가 또는 영향분석의 제도화 필요성을 논구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심우민, “디지털 전환과 사회갈등: 입법학적 분석과 대안”, 유럽헌법연구 제37호, 2021이 있다.

으로 하는 사회 질서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한다. 즉 단순히 인간이 중심이 되는 소통을 넘어서서, 그것을 매개하는 디지털 개체가 사회적 차원의 지배적인 소통 방식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디지털 개체 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회 질서로의 전환을 표방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통 및 매개 방식의 변화에 기반을 둔 전환 질서는 결과적으로 사회 규범 질서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청한다. 그 이유는 전통적인 사회 규율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새롭게 주류적인 사회적 난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 질서의 변화에 관해서는 플랫폼 서비스 영역을 예시로 들 수 있겠다. 이제까지 대형 포털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을 매개하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단순한 매개자로서의 (민사)법적 책임과 의무만이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은 이제 국가 공동체적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디지털 전환의 특성상 디지털 소통을 매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중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로 변모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플랫폼이 시장과 소비자뿐만 아니라,[5] 국가와 시민을 매개하는 사실상 필수적 소통 창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 속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단순한 민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공(법)적 책임 또는 책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시도가 종종 이루어진다. 즉 사실상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책임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인 규범 시각에서 보자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의 주체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영업 수행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위법행위가 아닌 한 국가적 차원의 공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전통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시각이 전적으로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사적 주체인 플랫폼의 영향력을 경우에 따라 국가 권력보다 더 강한 통제력을 가지는 사례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전통적인 공법적 규제와 민사법적 규제의 틀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사회변화에 의해 영향받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급검')였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를 계기도 포털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실급검 개선에 관한 논의가 급격하게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우선 관련 사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실급검에 관한 개념정의부터 살필 필요가 있겠다. 통상

5) 시장경쟁,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 등 관련 영역에 관한 세부적인 예시는 심우민 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갈등의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온라인 플랫폼 관련 갈등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0, 42면 이하 참고.

적으로 ‘실급검’이라고 불리는 용어는 학술적이거나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포털사 등의 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이다.[6] 실급검은 이용자들의 정보 습득 및 활용상의 용이성을 증대시키는 데 일조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급검의 순위를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주체들의 개입은 사실 매우 일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식을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상품, 연예인, 방송 및 기타 이벤트 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세간에는 이러한 실급검 조작을 대행하는 업체까지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실급검 조작 논란은 비단 최근에서야 쟁점으로 부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19년 특정 정치적 이슈(법무부장관 임명 등)와 관련하여 이에 관한 지지 및 반대 의견의 표명을 실급검을 통해 집단적으로 표출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즉 실급검이 자연스러운 검색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인위적인 선동행위에 의해 조작되고 있고, 플랫폼 사업자들을 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여론 형성의 왜곡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영역 서비스인 실급검 운영방식을 규제하기 위한 책무 또는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7] 최종적으로는 사업자들은 실급검 운영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실급검 사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쟁점으로 2022년 현 시점에서는 포털 뉴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속되고 있다. 즉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가 공적 성격을 가지는 언론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사업자들에 대하여 모종의 책임 또는 책무를 부여하자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둘러싼 규범적 논의 지형은 디지털 전환의 범주와 영향을 보여주는 단면일 뿐이다. 현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추동하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법규범적 시각 변화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의한 사회변동에 있어 고려해야할 쟁점은 (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변화를 사전에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그럼에도

---

6) 네이버의 경우에는 실급검을 공식적으로 ‘급상승 검색어’로 부르고, 이에 대해 “급상승 검색어는 단위 시간 동안 네이버 검색창으로 입력되는 검색어를 분석해 입력 횟수의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검색어 순서대로 보여주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여주는 관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다음의 경우에도 대동소이하다. 다음의 경우에는 실급검을 ‘실시간 이슈 검색어’라고 부르며, 이에 대해 “검색창으로 입력한 검색어들을 매분 단위로 분석하고 실시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검색어 입력 횟수의 증가폭 비율이 가장 큰 검색어를 순위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설명한다.

7)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198), 2019.10.29;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908), 2019.11.20.

불구하고 (ii) 현실적인 사회변화는 전통적인 법규범에 관한 관념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디지털 전환과 법규범 변화의 특징

1. 디지털 전환과 불확정성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사전에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정황은, 궁극적으로 법규범적 판단에 있어 불확정성(indeterminacy)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연결된다. 사실 불확정성의 문제는 세간의 통념과를 달리, 현재 사회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근대 법질서 또는 법체계가 본원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다소 거칠게 설명해 보자면, 법적 판단의 결과가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이 단일한 정답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8] 불확정성 테제는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당시 법학의 형식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법현실주의(Legal Realism), 그리고 이후 이들을 사실상 계승하면서 자유주의 법담론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에 의해,[9] 법이론적 논의에서 자연스러운 쟁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논제이다. 물론 불확정성을 제기한 논자들이 모두 불확정성과 법의 지배가 전적으로 양립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10] 예를 들면, 대표적인 비판법학자인 웅거(R.M. Unger) 교수는 불확정성 테제를 상당히 수긍하는 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극단화하여 법의 지배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11]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통적인 불확정성 담론에 더하여 법현실의 변화가 그러한 법규범적 판단의 불확정성을 가중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

8) 이러한 불확정성은 국내 번역어로 비결정성이라고도 불리는데, 김정오 교수는 케네디(D. Kennedy)의 방법론과 볼킨(J. Balkin)의 수정체론을 바탕으로 하여 간통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례(헌재결 1990. 9. 10. 89헌마82)의 논증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는 자유주의 법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나 법적 문제는 어떠한 것이든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법적, 도덕적 논증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정오,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비판적 분석: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제4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1.

9) 김정오, "자유주의 법체계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비판-던컨 케네디의 비판법담론을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제2권, 1992, 672-682면.

10) J. L. Coleman & B. Leiter, "Determinacy, Objectivity, and Authority" in A. Marmor(ed.), *Law and Interpretation*, Oxford Univ. Press, 1997, 215면.

11) R. M. Unger, *What Should Legal Analysis Become?*, Verso, 1996, 120면.

전환을 가속화 시키는 기술적 수단인 인공지능을 예시로 이러한 상황을 분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및 그 알고리즘(algorithm)은 현재의 기술 방식에 의거해 보자면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알고리즘을 구축하고 수정해 나가는 속성을 가진다. 그런데 종래 도처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기준 자체를 도출하기 어려운 비선형적 속성을 가지고, 다양한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데이터 자체도 상당히 비체계적이거나 무질서한 현실을 반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구성되어지는 알고리즘도 이러한 속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또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 구성된 알고리즘도 실제 엔지니어의 의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판단기준들을 정립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견 가능성을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규범적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전통적인 법규범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인과관계(因果關係) 파악을 핵심 요인으로 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 즉 특정인의 판단과 이에 근거한 행위가 다른 주체의 권리 또는 법익을 제약하는 경우에, 그러한 판단과 행위에 대해 법적 제한을 가하는 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특정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인간의 개입 없이) 알고리즘을 수정해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한 왜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 즉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12)]

물론 디지털 전환의 기술적 요인이 인공지능 기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디지털을 매개로 하는 기술적 요인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발전 수준과 경로를 거치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여전히 법규범적 판단의 불확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디지털 매개 및 소통 기술 그 자체가 모종의 인간 의도를 본연적으로 내포하기 보다는 단순히 매개하는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2. 사회변화와 법현실의 중요성

디지털 전환은 사회변화를 추동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변화는 법규범 질서 또는 관념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변화가 법규범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는 법원에 의한 판례 형성이나 변경의 방식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그것은 종래의 법규범을 통해 대응

12)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의 출시에 앞서 엔지니어들은 테스트 또는 실험 과정을 통하여 일부 파라미터 조정 등의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논의의 핵심을 그러한 인위적인 개입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별도의 규범 정립, 즉 입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단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실정법 조문의 문의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법판결에 근거한 대응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다 큰 폭의 규범적 변화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입법부의 입법을 통해 문제 사안을 해소하게 된다. 결국 사회 변화로 인해 법규범 질서가 변화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작정 입법의 경로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한에서 전통적인 법규범 질서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법과정(legal Process)이 전제로 하고 있는 체계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13]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단순한 실정법 조문의 해석상 문제는 물론이고, 앞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법규범 질서의 틀 자체의 변화까지도 요청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법 판결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법해석 방식에 의해 법적 판단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해석을 통한 새로운 법적 의미의 형성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14] 물론 이러한 사법 판결을 통한 대응방식은 실질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분쟁상황의 해소라는 사법부의 직업적 소명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회가 불가피하게 그러한 법형성을 수긍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예외적인 사법작용일 뿐 궁극적으로는 입법부의 입법을 통해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15]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입법부의 법형성의 문제 또한 그리 단순하지 만은 않다. 통상적인 입법의 경우 소위 입법사실(legislative fact), 즉 입법이 필요한 문제 상황과 규율 대상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황이 법현실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직면한 문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의 변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규범적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16] 이는 디지털 전환

13) 최대권 외, 사회변화와 입법, 오름, 2008, 15면.

14)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예시로 '타다' 서비스에 대한 무죄 판결도 이러한 맥락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타다 서비스가 전통적인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었는데, 법원은 이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타다 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사안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2019고단7006). 이는 사실상 타다 서비스가 기존 여객운송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서비스라는 법적 의미를 해석을 통해 창출하는 것으로서, 사법적 입법(judicial legisl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5) 이러한 상황인식은 최근 미국 법학전문대학원 커리큘럼에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의회입법학(Legislation) 또는 의회입법과 행정입법학(Legislation and Regulation) 등을 표제를 달고 있는 과목을 신설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봉철, "미국의 법률해석론 개관", 저스티스 제176호, 2020, 207면.

16)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소위 'IPTV법'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다. 전통적인 방송과 새롭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영역의 중첩적 성격을 가지는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라는 기술적 요인이 도입되었지만,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가 존재하지

이라는 사회변화가 과거 기술적 요인에 의한 사회변화와는 달리 매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이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전제로 본다면,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법규범적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법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인식이다. 즉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변화 요인과 맥락은 무엇이고, 이에 따라 법규범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통적인 법학의 지배적인 논리체계는 사실과 규범의 이원론적 구분에 입각하여 사실보다는 규범 그 자체의 논리체계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법학이라는 학문의 방법론적 자율성을 구축하는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17] 그러나 사회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법학적 지식과 체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더불어, 법현실 변화와 관련한 사실의 문제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는 종국적으로 법과 사회의 상호 작용에 관한 인식과 교육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Ⅳ. 미래 법교육에 대한 법사회학적 접근

1. 현재 법교육의 인식론적 토대와 그 한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학교육이 아닌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 왔다. 법교육은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으로 구분된다(「법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 이중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학교 법교육’이다. 물론 이는 사회 법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와 같은 공교육 시스템과 국가 교육과정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시민교육의 중핵적인 기능은 학교 교육에서 구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않아 제정된 것이 IPTV법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비단 IPTV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트리밍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OTT(Over The Top)의 출현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IPTV를 포함하는 새로운 미디어법 또는 방송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 영역과 시장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 영역의 중간지점에서 미디어 법제 규율의 공백 또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17) 심우민, “학교 입법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법교육 맥락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2021, 101면.

학교 법교육은 당연히 사회과(social studies), 그 중에서도 일반사회 영역에 해당한다. 사회과 교육이 궁극적으로 시민성 함양을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일반사회 영역(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은 이러한 시민성의 발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교육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교 교육 및 교육과정의 특성상 교육 내용은 소위 일반화된 지식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일반사회의 세부 영역에 관한 내용은 이와 연계되어 있는 정치학, 법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내용들을 차용해올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법학적인 지식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법교육은 어떠한 인식론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은, 향후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법교육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법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행정예고(교육부 공고 제2022-414호)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세부적인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 관한 내용을 이 글에서 언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교육과정 개선의 특징 중 하나인 '핵심 아이디어'에 근거하여 2022 교육과정이 상정하고 있는 인식론적 토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핵심 아이디어는 교수·학습에 있어 학생들의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등의 내용 요소를 연계하여 학교가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가진다. 법교육에 관한 핵심 아이디어를 학교급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8]

18)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 호[별책7]), 2022.

<표 1> 법교육 교육과정상 핵심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
사회 공통 교육과정 (초등학교 및 중학교)		• 우리 사회에는 일상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재판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에 기본권을 규정하고, 국가와 시민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으로 구성한다.
선택 중심 교육 과정	**통합사회2** 공통과목 (고등학교)	• 근대 시민 혁명 이후 확립된 인권은 오늘날 사회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시민의 노력으로 확장되고 있다. • 정의의 의미와 기준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 불평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법과사회 진로 선택 과목 (고등학교)	• 개인과 개인은 사적 자치에 의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분쟁을 해결한다. • 국가를 만든 목적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국가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따라 구성·운영된다. • 현대에는 복지국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개인 생활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그 한계를 지켜야 한다. •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법으로 규율할 문제가 있고, 법의 규율로 권리와 의무로 구성회는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이상과 같은 핵심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세부적인 성취기준 및 성취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 아이디어상의 특징적인 지점은 고등학교 진로선택 과목인 <법과 사회>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헌법적 의미를 가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는 현재의 법질서가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를 반영한 자유주의 또는 국가-사회 이원론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그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국가 법질서의 핵심은 기본권 또는 인권 보장에 있으며, 국가 통치구조 또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맥락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법에 관한 내용은 ‘(3) 법과 인권 보장’에 관한 부분에서 다루는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2개의 성취기준 모두 법의 의미와 역할에 있어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19] 중학교의 경우 ‘(5) 일상생활과 법’, ‘(6) 인권과 기본권’, ‘(7) 헌법과 국가기관’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19)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 호[별책7]), 2022, 32면.

양상을 보인다.[20] 이는 기존 2015 교육과정의 내용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통 교육과정 내용상 확인해 두어야할 지점은 '법의 의미와 역할'을 먼저 제시한 이후에, 인권 및 헌법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사실 교과서가 이러한 순서로 실제 기술된다면, 체계적인 교수·학습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한다. 즉 법 관념 그 자체를 확립된 지식으로 먼저 이해하고,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질서 전반을 학습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법교육의 경우, <통합사회2>에서 '(1) 인권보장과 헌법', '(2) 사회정의와 불평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21] 물론 '사회정의와 불평등' 부분은 전통적인 도덕과 교육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법률 문제와 결부하여 사회정의에 관한 기준이 활용될 것이므로 법교육 범주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사회 과목의 성격상 세부적인 법교육의 내용들을 언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헌법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교 법교육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지점은 종래 일반 선택 과목이었던 <정치와 법>이 진로 선택 과목인 <법과 사회>로 변모되었다는 부분이다. 이와 더불어, 정치 영역에 내용들이 제외되면서 그 형식적인 내용 체계도 상당부분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정치와 법>이 헌법, 민사법, 형사법, 사회법 순서와 같은 법학개론 순서에 의거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법과 사회>는 사법, 공법, 사회법 그리고 학교법 순으로 재편되어 있다.[22]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래 법학교육 내용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지점은 '학교생활과 법' 영역이 추가되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해서는 과연 진로 선택 과목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론이 필요할 것 같다. 즉 <법과 사회> 과목의 성격 및 목표와 관련하여 2022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법 관련 분야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와 고등학교라는 학교급을 생각해 볼 때 '학교생활과 법'에 관한 내용은 이와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법교육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ⅰ) 전반적으로 헌법과 인권을 중핵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ⅱ) 2022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 순서상 공법 영역보다는 생활법 영역(법의 의미와 역할, 사법 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ⅲ) 고등학교 법교육 선택과목의 경우 진로선택이라는 특징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선을 다소 해소

20)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 호[별책7]), 2022, 61-64면.
21)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 호[별책7]), 2022, 113-115면.
22)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 호[별책7]), 2022, 204면 이하.

하고 있다.

또한 인식론적 측면에서 보자면, 위와 같은 법교육 교육과정의 내용 및 체계는 기본적으로 근대 이후 정립된 자유주의 법질서(형식주의적 개념법학)를 일반화된 지식으로 상정하여, 이를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구성된 성격을 가진다. 즉 사회 변화와 결부한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보다는, 연혁적으로 정립된 지식을 교육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법 태도 또는 의식 함양'[23]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과정·기능 및 가치·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문서상의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단순한 지식·이해에 따른 준법만을 강조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성취기준 등의 내용을 고려해본다면, 법지식 및 준법을 중시여기는 본질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의 법교육 교육과정은 본질주의 또는 객관주의적 인식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2. 법교육의 법사회학적 인식 확대 필요성

이상과 같은 현재 법교육의 인식론적 토대에 입각해 보자면, 앞서 디지털 전환에 다른 법규범적 변화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제시한 바 있었던, 법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인식, 그리고 이에 입각한 법규범 변화 요인의 파악에 관한 내용은 법교육 과정을 통해 언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즉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 내용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 현대 사회변화와 이에 따른 법현실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법교육과 관련하여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실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 아닌 전문가교육으로서의 법학교육 영역에서도 최근 강조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실정법적 지식으로는 빠른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순수 규범학적 방법론을 탈피하여 사실적인 요인까지 고려하는 정책적 고려가 더욱 더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법교육도 단순히 전통적인 법학 지식체계와 내용만을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법학 연구 분야에서 법현실과 법규범, 또는 사실과 규범 간의 통섭적 고려가 가능토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회학 분야가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사회학'은 법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24]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법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연구영역[25]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협의적으로는 현대사회에서 학문분야로

23)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 호[별책7]), 2022, 14면; 32면; 61면; 122면.
24) 이영희, 법사회학, 법문사, 2003, 3면.
25) 최대권, "법사회학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학문인가", 최대권 외,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정립되어 있는 사회학 연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회적 문맥 속에서 법을 해석하거나 또는 입법론을 전개하는 영역까지도 광범위하게 상정할 수 있는 학문 활동도 법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6]

이러한 법사회학의 주된 연구대상은 바로 '사회적 실재로서의 법'이다. 이는 달리 말하여 사회 속에서의 법(law in society)을 다루는 것으로, 사회 현상 또는 사실로서 법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 결과 법사회학은 우선 사회의 법에 대한 작용에 대해 천착한다. 이는 법의 생성 또는 발생론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와는 역으로, 법사회학은 법의 사회에 대한 작용에도 연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에 대한 법이 기능 작용을 연구하는 것이다.[27] 이해를 위하여 이를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28]

<표 2> 법사회학의 연구 논제

구분	연구 질문(예시)
법발생론 (사회의 법에 대한 영향)	• 근대법 및 자본주의법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 법의 변화 내지 법의 진화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가? • 법의 생성 및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사회변동은 법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 정치, 경제, 종교는 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세계화 시대에 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디지털 전환 상황에서 법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법기능론 (법의 사회에 대한 영향)	• 법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통합 및 갈등) • 법의 개정이나 변화는 법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새로운 판결은 법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입법을 통한 사회변화의 조건은 무엇인가? • 제재와 위법행위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 • 법은 문화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법과정론	• 재판은 분쟁해결에 있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가? •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은 재판에 비해 효과적인가? • 사법에 대한 불신 정도와 원인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특징은 무엇인가?

일신사, 1995, 19면.

26) 최대권, "법사회학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학문인가", 최대권 외, 법사회학의 이론과 방법, 일신사, 1995, 18면.

27) 양건, 법사회학, 아르케, 2000, 24-25면.

28) 아래 표의 내용은 이상수,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 김명숙 외,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다산출판사, 2013, 11면을 참조 및 변형한 것이다.

구분	연구 질문(예시)
	• 법학교육제도는 어떠한 변화를 거치고 있는가? • 법률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은 무엇인가? •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 국민 법의식 현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자면, 법사회학은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대해 경험적(empirical) 방법론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즉 경험적 사실 상호 간의 관계에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경험적 사실을 통해 검증하며, 이 과정을 통해 보편적인 경험 법칙을 발견해 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29] 이와 관련해서는 과연 법사회학이 법학의 한 분과인가 아니면 사회학 또는 사회과학의 한 분과인가의 문제가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30] 그러나 규범학적 방법론과 그 자율성 및 독자성을 강조해 온 전통적인 (해석)법학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과학 방법론을 활용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라는 측면에서, 법사회학이 실제 어떠한 명칭으로 불리든 상관없이,[31] 크게는 법학적 연구 맥락을 기저에 두고 법사회학을 이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법학이 전제로 하는 방법론적 자율성이 실정법 규범을 전제로 하여 다분히 본질주의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법사회학은 이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글이 논제로 삼고 있는 디지털 전환이 미치는 영향력이 결국에는 법규범적 변화 상황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면, 결국 사회변동, 사회현상 및 법현실에 관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특히나 이러한 사회현상의 변동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 더욱이 본질주의적인 규범 일변도의 시각, 정립된 법지식 전수의 견지에서 법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교육적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적 측면에서는 사회변동과 결부하여 법규범이 어떻게 기능하고 구성되어지는 지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법교육의 본질주의적인 인식론을 탈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본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사회학은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29) 양건, 법사회학, 아르케, 2000, 191면.

30) 이에 대해서는 법사회학의 성격을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엄밀하게 접근하고 있는 이철우,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인가, 법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인가", 법철학연구 제9권 제1호, 2006, 66면 이하 참고.

31) 실제로 법사회학은 그 강조의 맥락에 따라 sociology of law, sociological jurisprudence, law and society studies, socio-legal studies 등으로 불린다. 물론 이러한 맥락에서 학문적으로 법사회학을 무엇으로 개념정의 할 것인지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포괄적으로 법사회학의 관점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판단된다.

3. 디지털 전환 맥락에서의 미래 법교육

디지털 전환에 다른 제반 교육의 변화 필요성은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22 교육과정 개선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며, 교육과정 변화가 요청되는 배경으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를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32] 이러한 맥락에서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도성 강화 교육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 구성 중점을 밝히며, 또한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도 강조한다.[33]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의 방향성에 있어, 우선 표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법교육의 변화는 디지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최근 발전하는 인공지능 등에 기반한 자동화 플랫폼을 활용하여, 문제시 되는 쟁점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법교육의 지식적 전수 내용에 관한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도처에 존재하는 디지털 자원을 어떠한 관점에서 활용토록 교육할 것인지의 문제이고, 이를 위해 법교육에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간의 법교육은 다분히 본질주의적 전제 하에서 정립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 및 교육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이러한 법교육이 실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안착에 상당한 기여를 해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의 법교육 교육과정의 내용을 고찰해 보면, 디지털 전환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방안을 포괄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는 독자적 성격을 가지는 규범학적 방법론의 폐쇄성을 법교육이 답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 결과 법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정적으로 만들고, 주어진 법 또는 누군가 결정해 준 법안을 인식토록 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변동과 법현실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입각하여 법규범인 인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법학 연구 분야 중 하나인 법사회학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법사회학 및 그 연구결과가 직접적으로 법교육 교육과정 및 내용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단선적인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법학

32)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 호[별책1]), 2022, 2면.
33)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 호[별책1]), 2022, 3면.

분야에서 법사회학에 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방법론적 접근방식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폐쇄적인 규범학적 방법론과 그에 따른 제약을 사회학 등 사회과학 방법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다. 그러나 법교육에 있어 학문적 방법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민성 교육 또는 사회과 교육이 가지는 취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교육이 포함된 사회과 교육의 경우 시·공간 속의 인간과 사회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문제나 쟁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를 가진다.[34]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법현실 및 법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기본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법사회학적 논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맥락에서, 현재 법교육 체제와 내용에 관해 이하에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다만 이하에서 제시하는 방안은 단번에 일의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기존에 수행해 온 교육 체계를 단번에 변호시키는 것도, 또 다른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의 제언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다.

(1) 사회변화와 결부한 법의 변동(진화)에 관한 교육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의 맥락에서 법사회학 연구가 법교육 내용에 관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법변동론 또는 법진화론[35]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법규범 및 그 체계는 지속적으로 사회현실을 반영하여 변화되어 왔다. 그런데 현재 법교육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 서구사회에서 정립된 법체계와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 전환에 의해 새롭게 요구되는 법규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회현상과 그 변화에 따라 법규범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관념을 교육내용에 일정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법문화에 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 근대법 체계를 계수하여 발전시켜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동일한 법체계 속에서도 상이한 문화적인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각기 다른 법의식이 문화적으로 생성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36] 따라서 법문화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문화와 다른 주요 구가들의 법

34)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 호[별책7]), 2022, 1면.

35) 법진화론(legal evolution)이라는 용어는 보다 낮은 단계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모든 법체계가 발전해간다는 의미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의 발전에 있어 예측할 수 있는 단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의할 점은 보다 높은 단계가 보다 좋은 또는 바람직한 법체계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양건, 법사회학, 아르케, 2000, 222면 이하 참조.

36) 법문화 연구는 법사회학 연구의 중요한 테마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 법문화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최근 연구로는 김정오, 한국의 법문

문화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파악하는 데 기여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맥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법규범 구조와 체계 그 자체가 아니라 법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는 우리사회의 고유 맥락을 교육하는 것이다. 특히나 디지털 전환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법문화 교육은 중요성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별 문화 양상과 현실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안 구성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3) 학교 법교육에서 생활 법교육을 지양하고, 생활 법교육은 사회 법교육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실 법에 관한 통상적인 관념은 '주어진 법' 또는 확립된 법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심층적인 이면과 구조보다는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지식교육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37]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교육 시수 및 시간을 고려할 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지식을 교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전환과 같은 급격한 사회변동의 맥락에서는 얼마 되지 않아 불필요한 지식으로 전락한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개별 법지식이 아니라, 디지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법지식 습득 및 활용 역량과 그 배경 지식 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에 생활법 교육의 내용을 포함시키기보다는 '사회 법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들과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4) 법학적 지식체계 강조 맥락을 탈피하여, 타 영역 및 교과와 융합하여 교육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는 다소 거시적인 사회 구조 변동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결국 규범 체계 및 논리의 변화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 법교육의 문제는 일반화된 법지식 교육에 초점을 두다보니, 그것의 변화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바탕한 참여 및 실천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교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법학의 지식 체계와 영역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법지식과 그 형성 맥락에 관한 내용을 다른 교육 영역(정치, 경제, 사회·문화, 역사) 또는 다른 교과교육 영역(도덕과, 국어과, 과학과, 영어과, 음악과, 미술과, 실과 등)들의 교육에 포함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타 영역 및 교과 영역은 규범적

화: 인식·구조·변화, 2006이 있다.

37) 최근 실시된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육받은 법지식의 활용도에 관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36.8%)이 충분하다는 의견(28.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유봉, 2021년 국민법의식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1, 141면). 또한 생활 법교육과 같은 실용적 법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66.1%)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4.9%)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제시되었다(이유봉, 2021년 국민법의식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1, 144면).

논리가 아닌 사회 사실적인 논리가 전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사회학적 맥락에서의 법현상을 포함시켜 교육하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측면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법지식과 체계에 관한 교육을 전면적으로 폐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법학이라는 학문적 영역 보존의 논리는 변화되는 상황 속 시민교육 발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영역 보존의 논리는 디지털 전환과 같은 사회 변동에 부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법을 물신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5) 이상과 같은 변화된 교육 체계와 내용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한 내용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양성대학 및 기관들이 법사회학, 법철학 등 기초법학[38] 분야에 관한 교육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과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법교육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지식과 체계에 관한 교육은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사회적인 변화 양상을 적실하게 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법학적 소양을 반드시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나 법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의 경우 법률가로서의 법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단순한 법시식을 학습하고 이를 교육하게 되는 경우 더욱더 폐쇄적인 지식과 법준수만을 강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현재의 사회 구조 속에서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한 법은 어떠한 기능적 속성을 가지는지 등에 대한 이해는 학교 현장 법교육을 시민교육 친화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중장기적인 미래 법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과 더불어, 부수적으로 언급하여야 할 논제가 있다. 그것은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으로 설정된 <법과 사회>의 문제이다. 과거 법교육에 관한 교과목인 <정치와 법>의 경우 일반 선택 교과목으로서, 그것이 과연 시민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진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물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사회>가 진로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따라서 이 과목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민성 교육의 측면보다는 법학이라는 학문적 체계가 강조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과 사회> 교과목에 관한 논의는 이제 초중등 사회과 교육의 맥락과는 다소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는 수준에서, 법학이라는 학문적 차원의 교육 및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체계를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

---

38) 기초법학은 통상적으로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등 실정법학 이외의 이론법학을 일컫는다. 굳이 비유하자면, 법실무에서 활용하는 실정법학을 임상법학이라고 칭한다면, 이에 대조되는 기초적인 이론 연구에 주력하는 법학연구를 기초법학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기초법학의 세부적인 이해에 대해서는 양천수, “기초법학의 의의와 필요성”, 법철학연구 제25권 제1호, 2022 참조.

Ⅴ.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사회에서 법교육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발전 맥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2008년 제정된 「법교육지원법」과 교육과정 속에 포함된 법교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교육의 기조도 준법교육, 생활 법교육, 가치 법교육 등의 강조점으로 진화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교육의 정체성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교에서는 어떠한 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 또는 학교 밖에서는 어떠한 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지향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초기 법교육이 불가피하게 법학이라는 학문체계를 원용하여 이를 발전시켜 왔다고 한다면, 이제 현 시점의 법교육은 보다 높은 단계로 변모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사회과 또는 시민성 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과 체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간 수없이 논의되어 왔던 법학교육과 법교육의 차별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별성은 단지 교과교육(학)의 영역 고수의 논리가 아니라, 법학적인 체계와 지식 자체가 폐쇄적인 규범 논리와 방법론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학적 지식 체계는 말 그대로 그러한 방법론을 실무적·실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방법론적 독자성은 법치주의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 자유주의 법질서가 상정하고 있는 법적 자율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재차 환기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 담론은 법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는 데 상당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전통적인 규범 논리 속에서는 이미 주어진 법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사회 구조 변동, 즉 사실적 요인들은 그러한 주어진 법과 그 배경적 관념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법학교육이 아닌 법교육은 기존의 규범학적 견지를 벗어나 다른 발전 노선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기존에 사회적으로나 법학적으로 형성되어 온 법체계와 지식 자체를 전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법지식이나 원리에 관한 교육만은 유지하되, 이러한 것들을 사회 현실 및 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응용할 수 있는 교육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요청 속에서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한국법교육학회(Korea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동 423호 (우: 08826)
TEL: 010-7275-3810
E-mail: lawedu@hanmail.net
간사: 김경래·이수진·권한님
홈페이지: 한국법교육학회 - lawedu.org
논문투고 홈페이지 - jams.lawedu.or.kr

LR
한국법교육학회
Law-Related Education Center